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71호

2018. 6. 28. (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228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	---

[훈 령]

제1011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4
---	---

◆ 고 시

제2018-187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6
제2018-196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7
제2018-197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8
제2018-198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5
제2018-199호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45
제2018-200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 추가 고시	55
제2018-204호 서울특별시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55

◆ 공 고

제2018-1478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58
제2018-1481호 도시관리계획(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59
제2018-1500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65
제2018-1503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65
제2018-150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72
제2018-1505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74
제2018-1510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76
제2018-15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77
제2018-1518호 설계업 등록공고	78
제2018-1519호 설계업 등록공고	78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8-5호 2018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80
-----------------------------------	----

◆ 구 고 시

제2018-5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종로구)	92
제2018-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종로구)	95
제2018-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용산구)	97
제2018-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용산구) ..	98
제2018-74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	101
제2018-76호 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104
제2018-72호 도시계획시설(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노원구)	107
제2018-64호 도시관리계획(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110
제2018-7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111

◆ 구 공 고

제2018-603호 도시관리계획(송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 세부개발계획)결정(안) 열람공고(종로구)	114
제2018-832호 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및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은평구)	116
제2018-78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마포구)	117
제2018-109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강남구)	118

◆ 사업소고시

제2018-1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22
제2018-1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22
제2018-1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23

◆ 사업소공고

제2018-22호 유물구입공고(서울역사박물관)	124
---------------------------------	-----

◆ 정 정	127
-------------	-----

자 치 법 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228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제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서울형장애아동수당

제3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조제1항11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3호의 관련 경비

별표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서울형장애아동수당	1인당 월 5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시비추가)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추가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 지원내용 추가(제3조제1항제13호 신설)
 -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서울형장애아동수당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11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4조 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 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찰, 경찰 통보사항 중 혐의없음, 죄가 안됨 결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징계등의 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훈령 제정의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조문 간 상충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제22조로 변경

나. 위원장이 처리할 사항을 규정한 제11조제2항제2호를 “검찰, 경찰 통보사항 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사항”에서 “검찰, 경찰 통보사항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결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부터 별표3까지의 징계등의 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

다. 폐지된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감사원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제13조 삭제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7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334호(1969. 6.11호)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0-206호로 변경 결정된 광진구 구의동 1301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구의동 130-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 나. 명 칭 : 공공업무 및 연구시설 증축
3. 사업시행 면적 : 19,839㎡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성명
 -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 나. 성 명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9개월
6. 건축계획 : 8,378.38㎡ (721.17㎡ 수평증축 포함)
 - 증축 건축면적 721.175㎡, 건폐율 12.46%, 용적률 35.34%, 규모 지하1층~지상4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연번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광진구 천호대로 176-10	대	19,839	19,83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상해 사항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02-3146-1712)에 관련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6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중량물재생센터 전기실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량물재생센터 내(변경사항 없음)
- 면 적 : 790,640㎡(변경사항 없음)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구분	처리시설	명 칭	시설의 종류 및 용량	건축물	비고
당초	공공하수 처리시설	중량 물재생센터	(신설)	(1층)변전실 681.3㎡	
변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ESS 시설 18MWh	(1층) 변전실 972.9㎡ (2층) 변전실 225.6㎡ ※ 증 517.2㎡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배수구역 : 중랑, 묵도, 청계
- 하수처리구역 : 동대문·중랑·성북·노원·강북·도봉·광진구전역, 종로·중구·성동 및 의정부시 일부

6.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2030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2018년까지 ESS 설비 설치 완료

7. 사업시행기간 : 2017. 9월 ~ 2030. 12월

8.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10.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02-2211-2560)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7호

제3중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중구청사 (본관)	중구 창경궁로 17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중구청사 (별관)	중구 창경궁로 17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광진구청 (제1별관)	광진구 자양로 1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광진구청 (제3별관)	광진구 자양로 1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 ·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구립 금호어린이집	성동구 금호2가동 산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성동구 보건소	성동구 마장로23길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성북구민회관	성북구 성북로4길 17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북구청사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행정지원센터	도봉구 창제5동 320	서울특별시 도봉구시설 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도봉구민회관	도봉구 창제5동 303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7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늘푸른 어린이집	노원구 노원로34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 ·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목2동 주민센터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목4동 주민센터	양천구 목동중앙로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신월1동 주민센터	양천구 곰달래로1길 3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신월2동 주민센터	양천구 중앙로53길 4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신월3동 주민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신정3동 주민센터	양천구 중앙로 209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신정6동 주민센터	양천구 목동서로 35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양천구민 체육센터	양천구 목동동로 8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서구청사	강서구 화곡로 30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 ·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구로구민회관	구로구 구로제5동 10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구로구민 체육센터	구로구 고척로45길 39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동작구청 본관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동작구 구민회관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연꽃어린이집	동작구 국사봉1길 235-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서원동 주민센터	관악구 신림로 282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반포3동 경로당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방배1동 제1경로당	서초구 서초대로114-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예술의마을 경로당	서초구 남부순환로323길 44-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 ·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반포2동 경로당	서초구 신반포로15길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방배3동 제1경로당	서초구 효령로14다길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장안경로당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암산마을 경로당	서초구 바우외로7길 8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방배2동 제1경로당	서초구 방배중앙로7길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동산마을 경로당	서초구 동산로12길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송동마을 경로당	서초구 송동길 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방배3동 제2경로당	서초구 남부순환로287 길 17-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우면동 경로당	서초구 바우외로4길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 ·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능안마을 경로당	서초구 능안말2길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서초2동 경로당	서초구 강남대로45길 17-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반포본동 경로당	서초구 신반포로32, 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반포1동 경로당	서초구 주흥9길 14-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기녕당 경로당	서초구 방배중앙로159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홍씨마을 경로당	서초구 홍씨마을길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반포4동 경로당	서초구 사평대로26길 9-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내곡어린이집	서초구 홍씨마을길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양재2동 어린이집	서초구 강남대로8길 66-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 ·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강남구청 제1별관	강남구 삼성2동 16-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남구청 제2별관	강남구 삼성2동 16-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청담평생학습관	강남구 학동로 4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치평생학습관	강남구 영등대로57길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명일1동 주민센터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37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암사1동 주민센터	강동구 올림픽로98가길 57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인재개발원 다솜관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서울대공원 해양관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군자지후생관	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	서울교통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어린이대공원 식물원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	동대문구 전농제2동 88	서울시립 대학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서울시립대 본관	동대문구 전농제2동 89	서울시립 대학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서울시립대 제2공학관	동대문구 전농제2동 90	서울시립 대학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4호(2018.02.22.) 로 변경 결정된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 정	증·감	변 경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37,851.5	증) 1,219.0	739,070.5	동작구 노량진동·대방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누락지번 추가에 따른 변경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9년
- 목표년도 : 2016년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737,851.5	증) 1,219.0	739,070.5	100.0	-
획지	소 계	505,185.9	증) 1,157.0	506,342.9	68.5	-
	단독주택	29,673.0	-	29,673.0	4.0	-
	공동주택	310,263.7	감) 2,480.0	307,783.7	41.6	-
	복합시설	148,709.2	-	148,709.2	20.1	-
	근린생활시설	7,907.0	-	7,907.0	1.1	-
	종교시설	8,633.0	증) 3,637.0	12,270.0	1.7	-
기반 시설	소 계	232,665.6	증) 62.0	232,727.6	31.5	-
	공원녹지	47,246.0	증) 2.0	47,248.0	6.4	-
	공공시설	16,532.0	-	16,532.0	2.2	공공청사 폐지 및 체육시설 신설
	공공공지	178.0	-	178.0	0.0	-
	문화시설	5,571.0	-	5,571.0	0.8	-
	학 교	59,393.0	-	59,393.0	8.0	-
	도 로	103,745.6	증) 60.0	103,805.6	14.1	-

※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체육시설 신설 (공공시설 면적 변경없음)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내 누락지번추가 및 종교시설 확보에 따른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9,952	10,075	26,694	27,027	
기시행구역		511	511	1,379	1,379	
준치지역		1,471	1,471	3,796	3,796	
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계	7,970	8,093	21,519	21,852	
	40㎡ 이하	638	647	1,723	1,747	
	40㎡~60㎡	2,735	2,928	7,384	7,906	
	60㎡~85㎡	3,522	3,588	9,509	9,688	
	85㎡ 초과	1,075	930	2,903	2,511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기준용적률 20% 완화에 따른 변경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교육시설	계	2	59,393.0	-	59,393.0	
	초등학교	1	12,061.0	-	12,061.0	
	고등학교	1	47,332.0	-	47,332.0	
공공청사	계	3	6,383.0	-	6,383.0	
	치안센터	1	400.0	-	400.0	
	주민센터	1	3,368.0	-	3,368.0	
	일자리+복지센터	-	1,997.0	감) 1,997.0	-	폐지
	도시재생지원센터	1	618.0	-	618.0	
문화시설	문화시설	1	5,571.0	-	5,571.0	
체육시설	체육관	1	-	증) 1,997.0	1,997.0	신설

※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청사(일자리+복지센터) 폐지 및 체육시설(체육관) 신설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공원 시설	노량진 근린공원	1	-	1	47,246.0	증) 2.0	47,248.0	생태공원, 중앙공원, 송학공원, 노들공원, 대방공원, (유한)공원
공공 공지	공공공지	1	-	1	178.0	-	178.0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누락지번 추가에 따른 변경

- 5) 교통계획(변경없음)
- 6) 경관계획(변경없음)
-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계			737,851.5	－	737,851.5	－	
촉진 구역	소계 (8개 구역)		460,629.9	－	460,629.9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132,132.0	－	132,132.0	주택재개발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16,208.0	－	16,208.0	주택재개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73,153.0	－	73,153.0	주택재개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27-5번지 일대	40,512.5	－	40,512.5	주택재개발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36,918.0	증) 1,219.0	38,137.0	주택재개발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72,809.0	－	72,809.0	주택재개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13-31번지 일대	33,154.5	－	33,154.5	주택재개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23-61번지 일대	55,742.9	－	55,742.9	주택재개발	
존치 구역	소계 (5개 구역)		147,416.0	－	147,416.0	－	
	노량진9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1번지 일대	18,564.0	－	18,564.0	－	
	노량진10존치관리구역	대방동 49-2번지 일대	57,305.0	－	57,305.0	－	
	노량진11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8번지 일대	21,415.0	－	21,415.0	－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310-95번지 일대	15,577.0	－	15,577.0	－	
	노량진13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221-59번지 일대	34,555.0	－	34,555.0	－	
존치시설		－	104,941.0	－	104,941.0	－	
기시행 구역	노량진1재개발구역	노량진동 122-37번지 일대	17,539.6	－	17,539.6	(주택재개발)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구역	노량진동 307-9번지 일대	7,325.0	－	7,325.0	(시장정비사업)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누락지번 추가에 따른 변경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감	변 경	
계			737,851.5	증) 1,219.0	739,070.5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722,315.5	증) 1,219.0	723,534.5	97.9
		제1종일반주거지역	46,790.0	증) 64.0	46,854.0	6.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67,854.9	－	167,854.9	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007.1	－	127,007.1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380,663.5	증) 1,155.0	381,818.5	51.7
	준주거지역		12,108.0	－	12,108.0	1.6
일반상업지역			3,428.0	－	3,428.0	0.5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누락지번 추가에 따른 변경

○ 노량진1~4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감	변 경	
계			36,918.0	증) 1,219.0	38,137.0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36,918.0	증) 1,219.0	38,137.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1.0	증) 64.0	1,475.0	3.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35,507.0	증) 1,155.0	36,662.0	96.1
	준주거지역		-	-	-	-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누락지번 추가에 따른 변경

○ 노량진6~8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10)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순부담 면적(㎡)	대지면적 (㎡)	완화 받을수 있는 용적률(%)	계획 용적률(%)	비고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132,132.0	190	250	20,907.0	101,880.0	244.21	244.21	-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16,208.0	190	414	2,847.0	12,108.0	414.00	397.94	역세권밀도 계획적용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	73,153.0	190	250	9,392.0	44,300.0	244.03	244.03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40,512.5	210	260	5,796.2	31,540.8	260.17	252.66	기준용적률 20% 완화
노량진5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36,918.0	190	250	6,890.0	28,527.0	249.65	기준용적률 20% 완화
	변경	38,137.0	210	300	6,832.1	29,684.0	272.83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72,809.0	210	300	12,388.0	54,242.0	272.35	268.01	기준용적률 20% 완화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	33,154.5	195	240	4,173.0	22,478.0	242.06	237.44	기준용적률 5% 완화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55,742.9	210	300	6,923.3	42,080.9	242.77	229.70	기준용적률 20% 완화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기준용적률 20% 완화에 따른 변경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기반시설(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증 · 감	변 경	
기 반 시 설	총 계	232,665.6	증) 62.0	232,727.6	100.0
	도 로	103,745.6	증) 60.0	103,805.6	44.6
	공 원	47,246.0	증) 2.0	47,248.0	20.3
	학 교	59,393.0	-	59,393.0	25.5
	공공시설	16,532.0	-	16,532.0	7.1
	공공공지	178.0	-	178.0	0.1
	문화시설	5,571.0	-	5,571.0	2.4

※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내 공공시설 변경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면적 변경(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 기정 : 일자리+복지센터 2,400㎡(환산 기부채납면적 984㎡) → 변경 : 체육관 1,809㎡(환산 기부채납면적 984㎡)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누락지번 추가에 따른 변경

○ 재정비촉진구역별 순부담률 산정(변경)

- 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비율은 10%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역명		재정비 촉진구역 (㎡) ①	계획 기반시설 (㎡) ②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③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④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 시설면적(㎡) ⑤	순부담면적 (㎡) (B=②-③-④-⑤)	순부담률 (%) (B/①)
합계	기정	460,629.9	126,955.2	35,072.3	22,605.7	-	69,316.5	15.05
	변경	461,848.9	127,017.2	35,114.1	22,683.8	-	69,258.6	15.00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32,132.0	30,252.0	3,681.0	5,664.0	-	20,907.0	15.82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16,208.0	4,100.0	215.0	1,038.0	-	2,847.0	17.56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73,153.0	28,853.0	14,415.0	5,046.0	-	9,392.0	12.84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40,512.5	9,955.7	2,098.9	2,099.9	-	5,796.2	14.31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기정	36,918.0	8,391.0	467.0	1,034.0	-	6,890.0	18.66
	변경	38,137.0	8,453.0	508.8	1,112.1	-	6,832.1	17.91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72,809.0	22,286.0	6,818.0	3,080.0	-	12,388.0	17.01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5	10,676.5	5,442.5	1,061.0	-	4,173.0	12.59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55,742.9	12,441.0	1,934.9	3,582.8	-	6,923.3	12.42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면적은 건축물(체육시설 1,809㎡)환산 기부채납면적 반영(984㎡)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누락지번 추가에 따른 변경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역명		계 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부분임대
				소계	40㎡이하	40~50㎡	50~60㎡	60~85㎡	
합계	기정	7,970	6,567	1,403	577	541	264	21	23
	변경	8,093	6,668	1,425	586	551	267	21	48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997	1,657	340	162	140	38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421	315	106	-	-	85	21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1,012	838	174	80	74	20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860	713	147	60	64	23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기정	623	515	108	45	48	15	-	
	변경	746	616	130	54	58	18	-	25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1,499	1,237	262	106	106	50	-	23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551	457	94	44	39	11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1,007	835	172	80	70	22	-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6) 폐기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7) 방재계획(변경없음)

18) 정보화계획(변경없음)

19)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20) 특성화계획(변경없음)

21)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 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폐율 (%)	계획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층수	비고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32,132.0	101,880.0	190	250	22.49	244.21	-/30이하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16,208.0	12,108.0	190	414	43.59	397.94	-/29이하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73,153.0	44,300.0	190	250	24.34	244.03	-/30이하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40,512.5	31,540.0	210	260	23.54	252.66	20/30이하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36,918.0	28,527.0	190	250	22.42	249.65	-/30이하	-
	변경	38,137.0	29,684.0	210	300	24.56	269.73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72,809.0	54,242.0	210	300	20.61	268.01	-/28이하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5	22,478.0	195	240	23.67	237.44	18/30이하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55,742.9	42,080.9	210	300	20.10	229.70	22/30이하	-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누락지번 추가에 따른 변경

○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변경)

구역명		합계	분양(부분임대)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계	기정	7,970 (23)	6,567 (23)	1,991	3,501	1,075 (23)	1,403	577	541	264	21
	변경	8,093 (48)	6,668 (48)	2,171	3,567	930 (48)	1,425	586	551	267	21
노량진1촉진구역		1,997	1,657	269	812	576	340	162	140	38	-
노량진2촉진구역		421	315	99	216	-	106	-	-	85	21

구 역 명	합계	분양(부분임대)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노량진3축진구역	1,012	838	198	443	197	174	80	74	20	—
노량진4축진구역	860	713	352	361	—	147	60	64	23	—
노량진5축진구역	기정	623	515	80	250	185	108	45	48	15
	변경	746 (25)	616 (25)	260	316	40 (25)	130	54	58	18
노량진6축진구역	1,499 (23)	1,237 (23)	460	729	48 (23)	262	106	106	50	—
노량진7축진구역	551	457	208	230	19	94	44	39	11	—
노량진8축진구역	1,007	835	325	460	50	172	80	70	22	—

※ ()는 부분임대 세대임

가)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계		73,153.0	－	73,153.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28,853.0	－	28,853.0	39.4	
	공원	3,219.0	－	3,219.0	4.4	
	도로	13,485.0	－	13,485.0	18.4	
	학교	12,061.0	－	12,061.0	16.5	
	공공시설	88.0 (1,997.0)	－	88.0 (1,997.0)	0.1	공공청사 폐지 및 체육시설 신설
택지 (획지)	소계	44,300.0	－	44,300.0	60.6	
	3 - 1	6,659.0	－	6,659.0	9.1	주거복합
	3 - 2	8,912.0	－	8,912.0	12.2	주거복합
	3 - 3	9,420.0	－	9,420.0	12.9	주거복합
	3 - 4	19,309.0	－	19,309.0	26.5	공동주택

※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청사(일자리+복지센터) 폐지 및 체육시설(체육관) 신설

※ ()는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내 공공시설 면적임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류	18	25~40	주간선 도로	6,490	노량진역전	구로동	일반도로	상도동 길	건고 177 (62.12.08)	장승 배기길
기정	중로	2류	6	15	집산 도로	142	노량진동 51	노량진동 84-9	일반도로	-	서고 503 (09.12.10)	
기정	중로	3류	A	12~15	집산 도로	240 (100)	노량진동 309-39	노량진동 225-5	일반도로	-	서고 503 (09.12.10)	
기정	중로	3류	35	12	국지 도로	95	노량진동 232-143	노량진동 232-255	일반도로	-	서고 503 (09.12.10)	
기정	중로	3류	36	12	국지 도로	250	노량진동 232-188	노량진동 84-11	일반도로	-	서고 503 (09.12.10)	
기정	소로	1류	4	10	국지 도로	120	노량진동 225-32	노량진동 225-158	일반도로	-	서고 503 (09.12.10)	
기정	소로	2류	4	8	국지 도로	275	노량진동 120-6	노량진동 225-294	일반도로	-	동작구고시 2000-45호 (00.10.26)	
기정	소로	3류	6	6~15	국지 도로	238	노량진동 229-21	노량진동 225-282	보행자우 선도로	-	서고 60 (93.03.12)	

※연장의 ()는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④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 공원	대방동 44-29번지일대	11,683.0 (1,984.0)	-	11,683.0 (1,984.0)	조선총독부 고시제208호 (1940.03.12.)	
기정	⑤	노량진근린공원 (노들공원)	근린 공원	대방동 119-171번지일대	1,235.0	-	1,235.0	조선총독부 고시제208호 (1940.03.12.)	

※ ()는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임

○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폐지	③	동작구 일자리+복지센터	노량진동 225-171번지일대	88.0 (1,997.0)	감) 88.0 (감)1,997.0)	-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는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임

○ 체육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①	체육관	노량진동 225-171번지일대	-	증)88.0 (증)1,997.0)	88.0 (1,997.0)	-	

※ ()는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임

○ 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②	노량진 초교	학교	노량진동 237번지일대	12,061.0	-	12,061.0	서울시고시 제399호 (1978.8.08)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40,512.5	－	40,512.5	100.0	－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계	8,971.7	－	8,971.7	22.1	－
	도로	5,554.7	－	5,554.7	13.7	－
	공원	1,508.0	－	1,508.0	3.7	－
	공공시설	1,909.0 (1,997.0)	－	1,909.0 (1,997.0)	4.7	공공청사 폐지 및 체육시설 신설
택 지 (획 지)	소 계	31,540.8	－	31,540.8	77.9	－
	4 - 1	31,540.8	－	31,540.8	77.9	공동주택

※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청사(일자리+복지센터) 폐지 및 체육시설(체육관) 신설

※ ()는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내 공공시설 면적임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1	15~20	국지 도로	944 (163)	노량진동 310-154	노량진동 215-334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60호 (93.03.12.)	
기정	중로	3류	A	12~15	집산 도로	240 (140)	노량진동 309-39	노량진동 225-5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09.12.10)	
기정	소로	1류	4	10	국지 도로	120	노량진동 225-32	노량진동 225-158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09.12.10.)	
기정	소로	2류	4	8	국지 도로	275 (95)	노량진동 120-6	노량진동 225-294	일반 도로	-	동작구고시 2000-45호 (00.10.26)	
기정	소로	2류	6	8	국지 도로	143	노량진동 229-116	노량진동 309-16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09.12.10.)	
기정	소로	3류	6	6~15	국지 도로	238	노량진동 229-21	노량진동 225-196	보행자 우선도 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93.03.12)	

※연장의 ()는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④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 공원	대방동 44-29번지일대	11,683.0 (1,508.0)	-	11,683.0 (1,508.0)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 1940.03.12	-

※ ()는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임

○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③	동작구 일자리+복지센터	노량진동 225-171번지일대	1,909.0 (1,997.0)	감)1,909.0 (감)1,997.0)	-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는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임

○ 체육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신설	③	체육관	노량진동 225-171번지일대	-	증)1,909.0 (증)1,997.0)	1,909.0 (1,997.0)	-	

※ ()는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임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 조건 사항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체육시설은 공공건축물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가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토록 할 것

〈다음 사항을 권고함〉

- 체육시설내 청소년들을 위한 부대시설(농구대) 설치를 검토할 것

라)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36,918.0	증) 1,219.0	38,137.0	-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누락지번 추가에 따른 변경

(2)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36,918.0	증) 1,219.0	38,137.0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8,391.0	증) 62.0	8,453.0	22.2	－
	도 로	6,918.0	증) 60.0	6,978.0	18.3	－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정비기반 시 설	공 원	1,473.0	증) 2.0	1,475.0	3.9	-
택 지 (획 지)	소 계	28,527.0	증) 1,157.0	26,984.0	70.8	-
	5-1	28,527.0	감) 2,480.0	26,047.0	68.3	공동주택
	5-2	-	증) 3,307.0	3,307.0	8.7	종교부지
	5-3	-	증) 330.0	330.0	0.9	종교부지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내 누락지번추가 및 종교시설 확보에 따른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464 (133)	노량진동 240-79	노량진동 270-2	일반 도로	-	서고 503 (09.12.10.)	
기정	중로	2	7	15	집산 도로	715 (29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 도로	-	서고 503 (09.12.10.)	
기정	중로	2	9	15	국지 도로	645 (3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우선도로	-	서고 503 (09.12.10.)	
기정	중로	3	101	12	-	200 (19)	노량진동 27-2	노량진동 87-49	-	-	서고 174 (78.04.25.)	
기정	소로	2	C	8	국지 도로	59	노량진동 271-32	노량진동 289-42	일반 도로	-	서고 174 (78.04.25.)	

※연장의 ()는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공원(변경)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③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 공원	대방동 44-29번지 일대	11,681.0 (1,473.0)	증) 2.0 (증) 2.0)	11,683.0 (1,475.0)	조선총독부 고시제208호 (1940.03.12.)	-

※()는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공동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노량진5재정비 촉진구역 내	150.0	감) 80.0	70.0	-
	경비실		-	증) 20.0	20.0	-
	주민공동시설		1,050.0	감) 750.0	300.0	-
	경로당		96.0	증) 4.0	100.0	-
	보육시설		110.0	증) 90.0	200.0	-
	문고		50.0	증) 50.0	100.0	-
	주민운동시설		-	증) 500.0	500.0	-
	어린이놀이터		-	증) 1,058.0	1,058.0	-

※ 재개발사업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준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노량진5 재정비	36,918.0	-	-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일대	97	-	-	97	-	-
변경	촉진구역	38,137.0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누락지번 추가에 따른 변경

○ 건축시설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 수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평 균	최 고
기정	노량진5 재정비 촉진구역	36,918	5-1	28,527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일대	공동 주택	22.42	249.65	90 이하	-	30층 이하
변경	노량진5 재정비 촉진구역	38,137	5-1	26,047	동작구 노량진동 273-9번지일대	공동 주택	24.56	269.73	90 이하	-	30층 이하
			5-2	3,307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일대	종교 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5-3	330	동작구 노량진동 284-1번지일대	종교 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 수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평 균	최 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계	임대(㎡)				분양(㎡)			
					소계	40이하	40~50	50~60	소계	60이하	60~85	85이상
			기 정	623	108	45	48	15	515	80	250	185
			변 경	746(25)	130	54	58	18	616(25)	260	316	40(25)
			※ ()는 부분임대 세대수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앙공원 변 : 건축한계선 3m ●15m, 보행자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6m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공공보행통로 계획(신설)			●노량진1구역과 8구역을 연결하는 동서간 공공보행통로 계획(폭 7m)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	규모별 세대수				비고
					합계	40㎡이하	40㎡~50㎡	50㎡~60㎡	
기정	노량진5구역	36,918.0	—	—	108	45	48	15	—
변경		38,137.0	—	—	130	54	58	18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기준용적률 20% 완화에 따른 변경

(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의 조건 사항

<2017년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2017.12.12.)>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등 해당 하는 절차에서 검토하여 반영할 것
 - 대상지는 빗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불리한 지형여건임을 감안하여 서울 지역 방재성능목표 기준 등에 적합하게 우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BF)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인증을 받을 것

<2018년 제1차 소위원회 자문(2018.03.30.)>

- 자전거도로는 지형의 경사 및 차도가 인접해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전 여부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계획할 것
- 공원은 지형(경사도 등), 역할 및 기능(설치기준, 보행환경, 녹지축 연결 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다)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2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 경	
계			737,851.5	증) 1,219.0	739,070.5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722,315.5	증) 1,219.0	723,534.5	97.9
		제1종일반주거지역	46,790.0	증) 64.0	46,854.0	6.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67,854.9	－	167,854.9	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007.1	－	127,007.1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380,663.5	증) 1,155.0	381,818.5	51.7
	준주거지역		12,108.0	－	12,108.0	1.6
일반상업지역			3,428.0	－	3,428.0	0.5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누락지번 추가에 따른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 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류	18	25 ~ 40	주간선 도로	6,490 (730)	노량진역전	구로동	일반 도로	상도동 길	건설부고시 제177호 1962.12.08	장승 배기길
기정	중로	2류	6	15	집산 도로	142	노량진동 51	노량진동 84-9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7	15	집산 도로	715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A	12 ~ 15	집산 도로	240	노량진동 309-39	노량진동 225-5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101	12		200	노량진동 27-2	노량진동 87-49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04.25	
기정	중로	3류	33	12	국지 도로	39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46-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류	34	12	국지 도로	65	노량진동 233-5	노량진동 248-14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5	12	국지 도로	95	노량진동 232-143	노량진동 232-255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6	12	국지 도로	250	노량진동 232-188	노량진동 84-1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7	12	국지 도로	188	노량진동 315-135	노량진동 313-7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1류	4	10	국지 도로	120	노량진동 225-32	노량진동 225-158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2류	4	8	국지 도로	275	노량진동 120-6	노량진동 225-294	일반 도로		동작구고시 2000-45호 2000.10.26	
기정	소로	2류	C	8	국지 도로	59	노량진동 271-32	노량진동 289-4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04.25	
기정	소로	2류	D	8	국지 도로	61	노량진동 256-51	노량진동 294-63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4.25	
기정	소로	2류	6	8	국지 도로	143	노량진동 229-116	노량진동 309-16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3류	3	6		71	노량진동 310-150	노량진동 310-46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A	6		130	대방동 39-1	대방동 68-7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20호 1976.06.02	
기정	소로	3류	6	6~15	국지 도로	238	노량진동 229-21	노량진동 225-196	보행자 우선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7	4		93	노량진동 219-37	노량진동 215-87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C	4		242	노량진동 83-15	노량진동 92-2				사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5	15	집산 도로	745	노량진동 240-79	대방동 23-58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9	15	국지 도로	645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우선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25	15~20	집산 도로	1,325 (292)	대방동 49-6	상도동 366-5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등용길
기정	소로	3류	B	6	국지 도로	34	대방동 32-1	대방동 68-87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64호 1981.07.11	
기정	소로	3류	10	5~6	특수 도로	25	대방동 11-25	대방동 11-8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06.03	
기정	중로	2류	1	15~20	국지 도로	944 (163)	노량진동 310-154	노량진동 215-334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60호 1993.03.12	만양로 3길
기정	소로	3류	12	6~8	국지 도로	238	대방동 44-200	대방동 43-2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 2017.02.02	

※ ()안은 지구 내 연장

(2) 공간시설(변경)

□ 공 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	노량진근린공원	근린 공원	노량진동 225-291일대	409,659.0 (46,624.0)	증) 2.0 (증) 2.0)	409,661.0 (46,626.0)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 1940.03.12	()는 지구 내
지 구 내	①	노량진근린공원 (대방공원)	근린 공원	대방동 226-7번지	6,881.6	-	6,881.6	-	-
	②	노량진근린공원 (송학공원)	근린 공원	노량진동 225-291번지일대	11,080.0	-	11,080.0	-	-
	③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 공원	대방동 44-29번지일대	11,681.0	증) 2.0	11,683.0	-	-
	④	노량진근린공원 (생태공원)	근린 공원	노량진동 252-3번지일대	15,746.4	-	15,746.4	-	-
	⑤	노량진근린공원 (노들공원)	근린 공원	노량진동 119-171번지일대	1,235.0	-	1,235.0	-	-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누락지번 추가에 따른 변경

☐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공공공지	노량진동 329-12번지일대	178.0	-	178.0	동작구고시 제2003-94호 (2003.8.30)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공공청사	치안센터	대방동 45-4일대	400.0	-	400.0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6.3)	-
기정	②	공공청사	노량진2동 주민센터	노량진동 294-41일대	3,368.0	-	3,368.0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폐지	③	공공청사	동작구 일자리+ 복지센터	노량진동 225-171 일대	1,997.0	감) 1,997.0	-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기정	④	공공청사	도시재생 지원센터	대방동 45-4일대	618.0	-	618.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 (2017.02.02)	-

※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청사(일자리+복지센터) 폐지 및 체육시설(체육관) 신설

☐ 체육시설(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①	체육시설	체육관	노량진동 225-171 일대	-	증)1,997.0	1,997.0	-	

※ 노량진3·4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청사(일자리+복지센터) 폐지 및 체육시설(체육관) 신설

☐ 학 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영화초교, 영등포 중고교	학교	대방동 13-2번지일대	47,332.0	-	47,332.0	서울시고시 제178호 (1978.4.26)	-
기정	②	노량진초교	학교	노량진동 237번지일대	12,061.0	-	12,061.0	서울시고시 제399호 (1978.8.08)	-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①	사회 복지시설	-	노량진동 224-6	159.0	-	159.0	동작구고시 제2008-33호 (2008.7.31)	-

☐ 문화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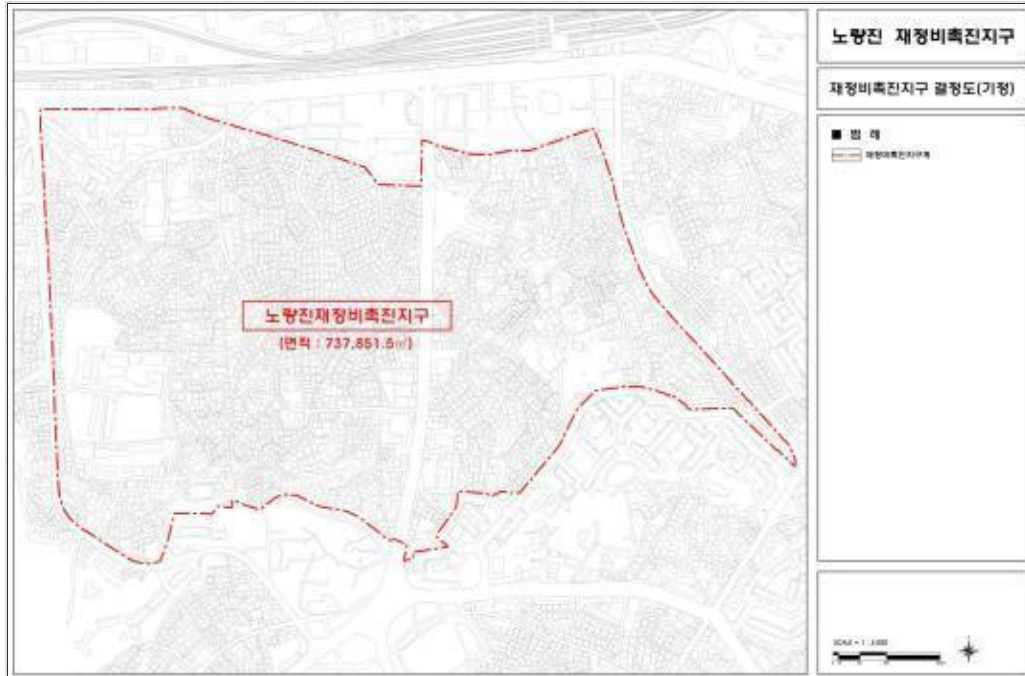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노량진동 314-10번지일대	5,571.0	-	5,571.0	-	-

라.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따름

마.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바. 시민의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3) 및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02-820-926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
촌치지역 결정도

■ 범례

- 재정비촉진지구구역
- 재정비촉진지구내역
- 촌치면치구역
- 촌치지역

SCALE 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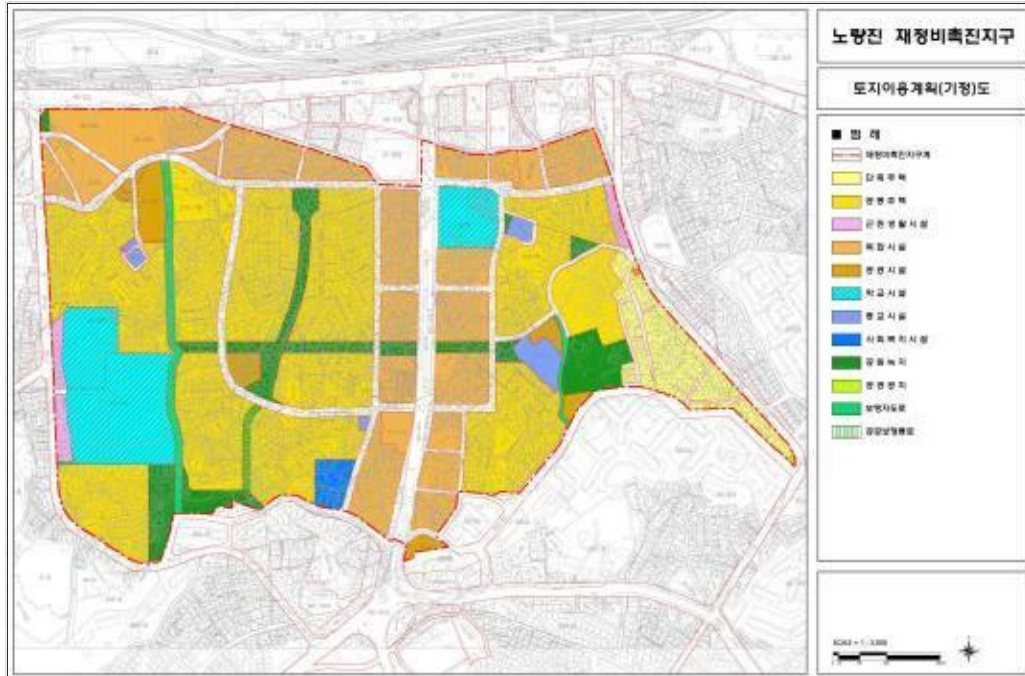
노랑진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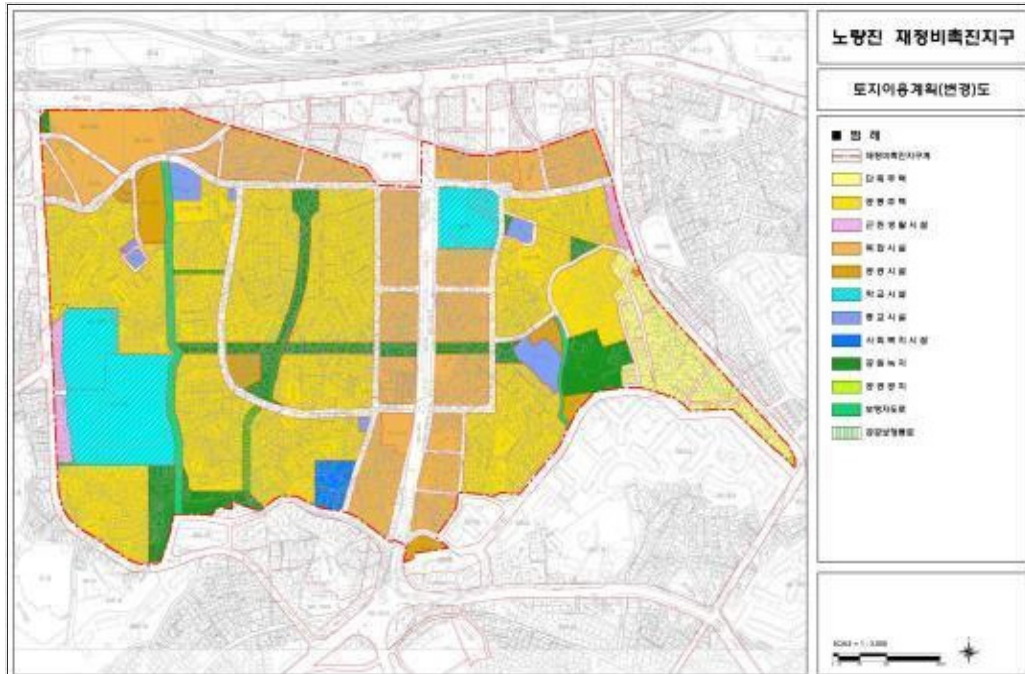
■ 범례

- 노랑진재정비촉진지구
- 노랑진재정비촉진지구경계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2종)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일반민간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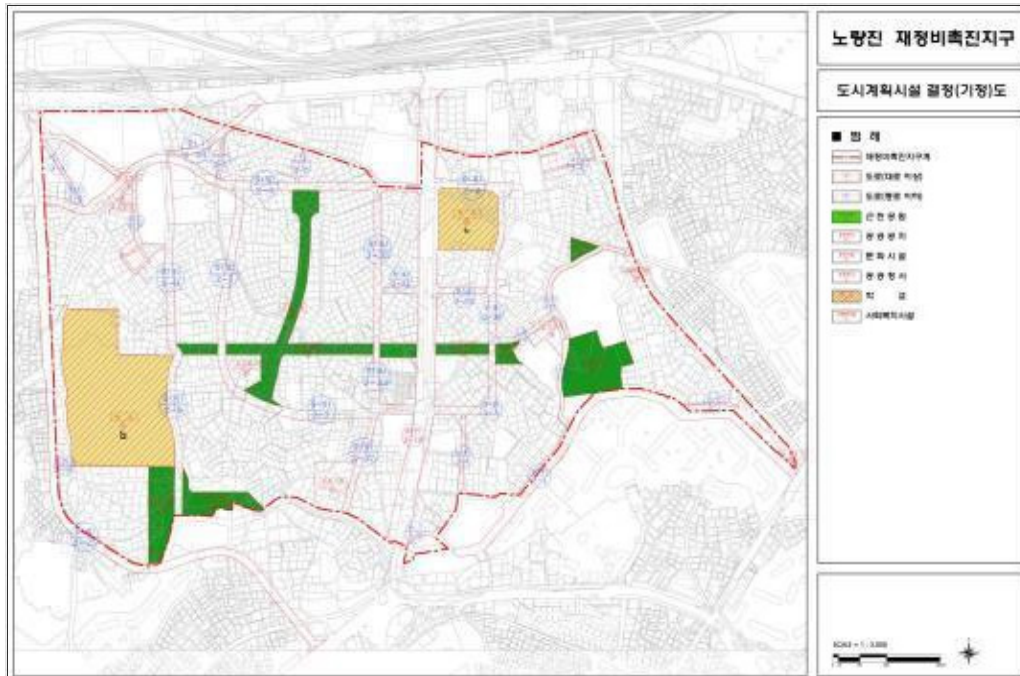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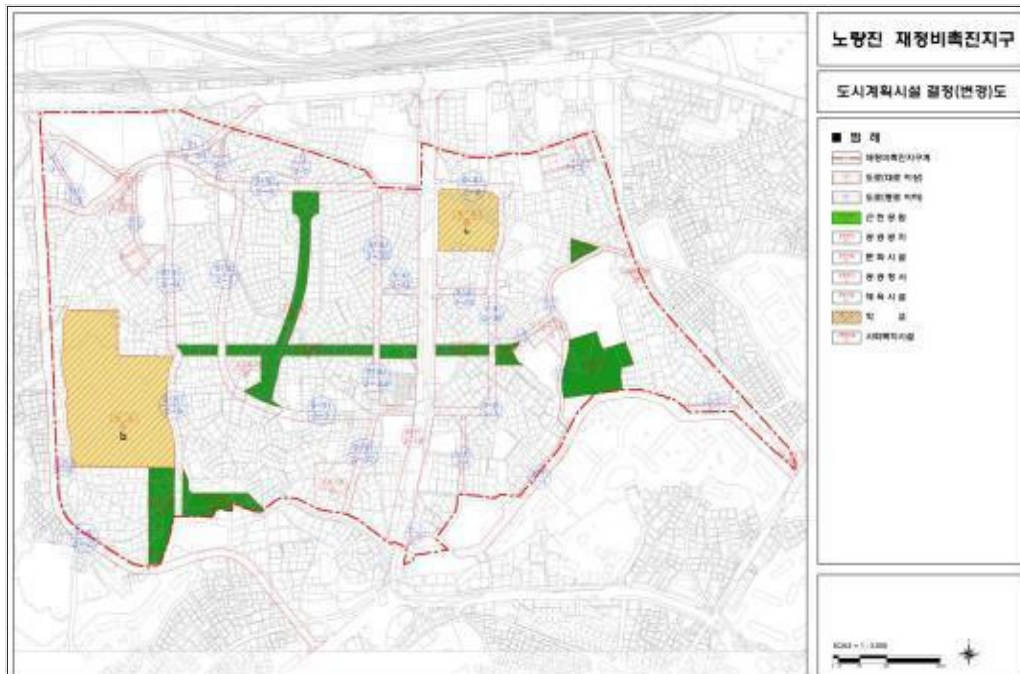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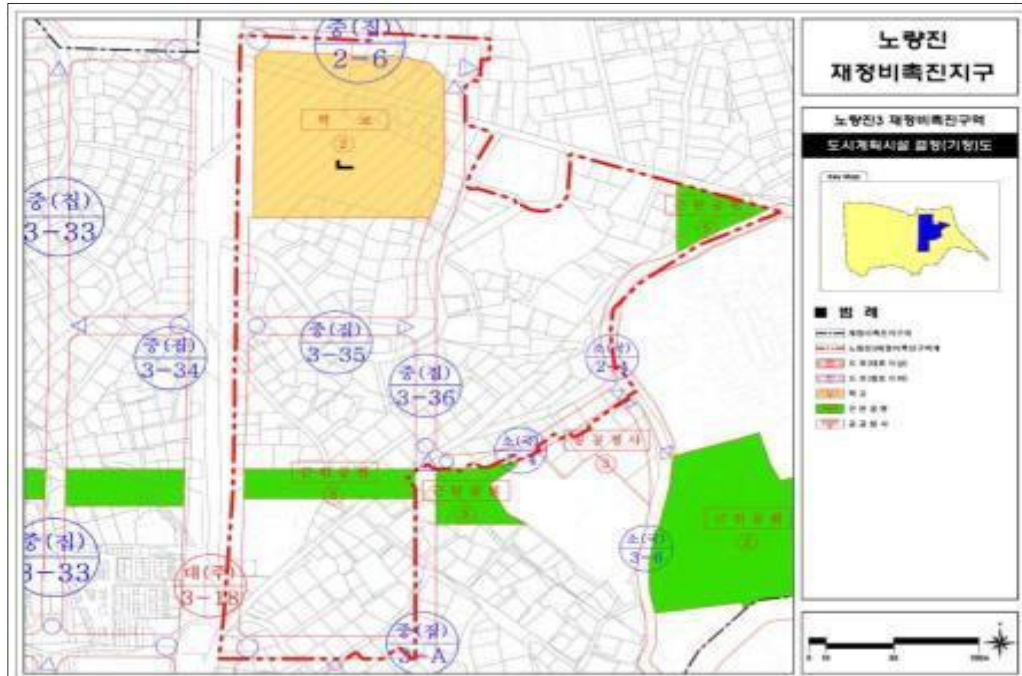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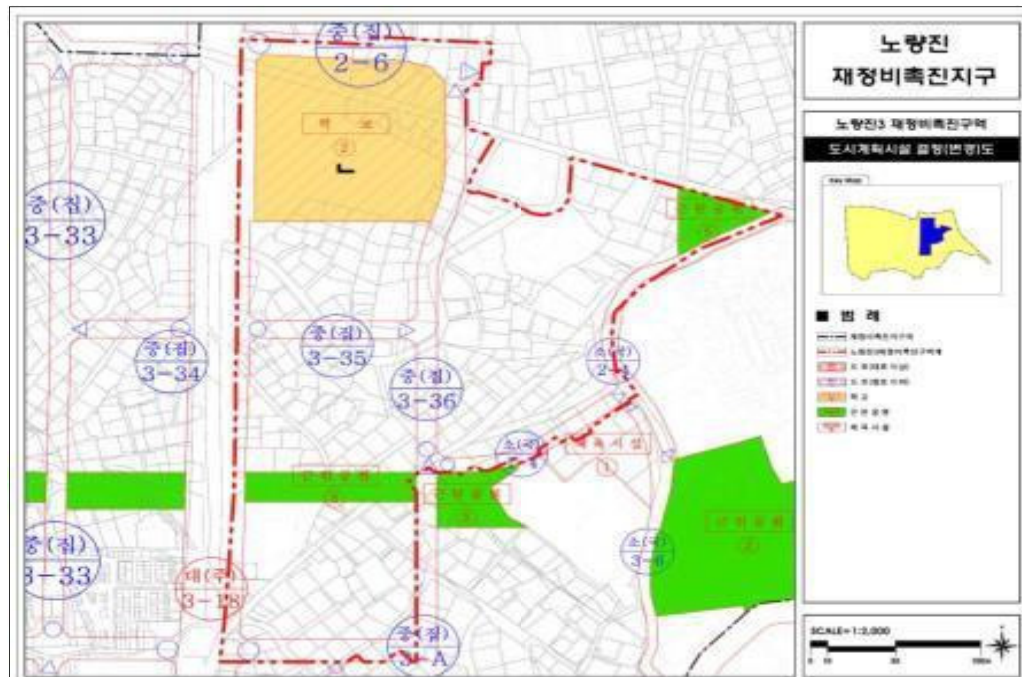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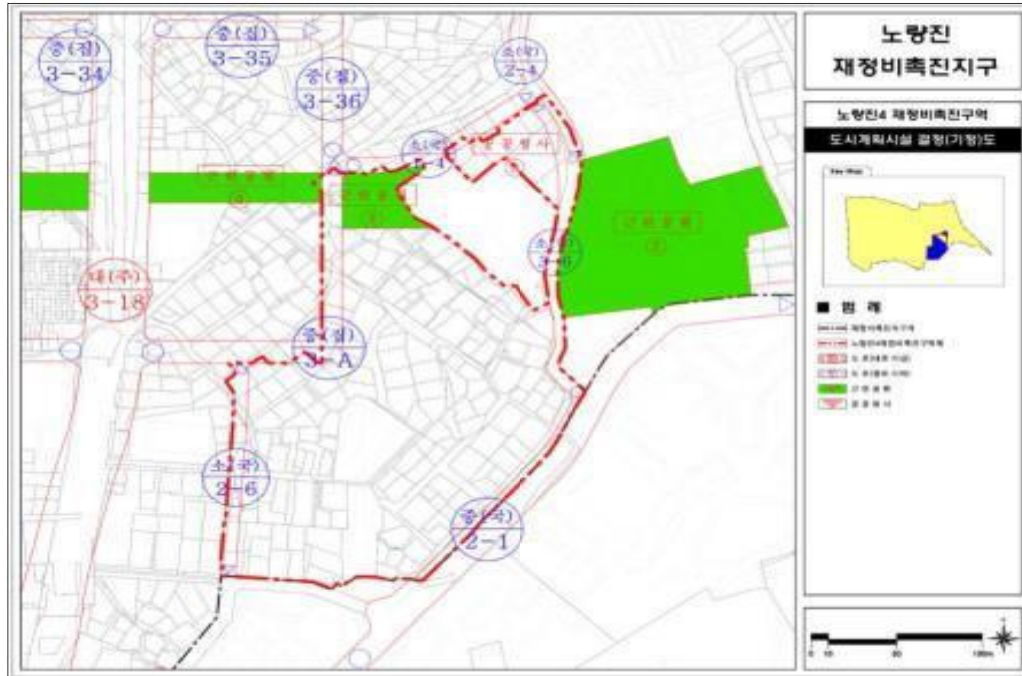
■ 노량진3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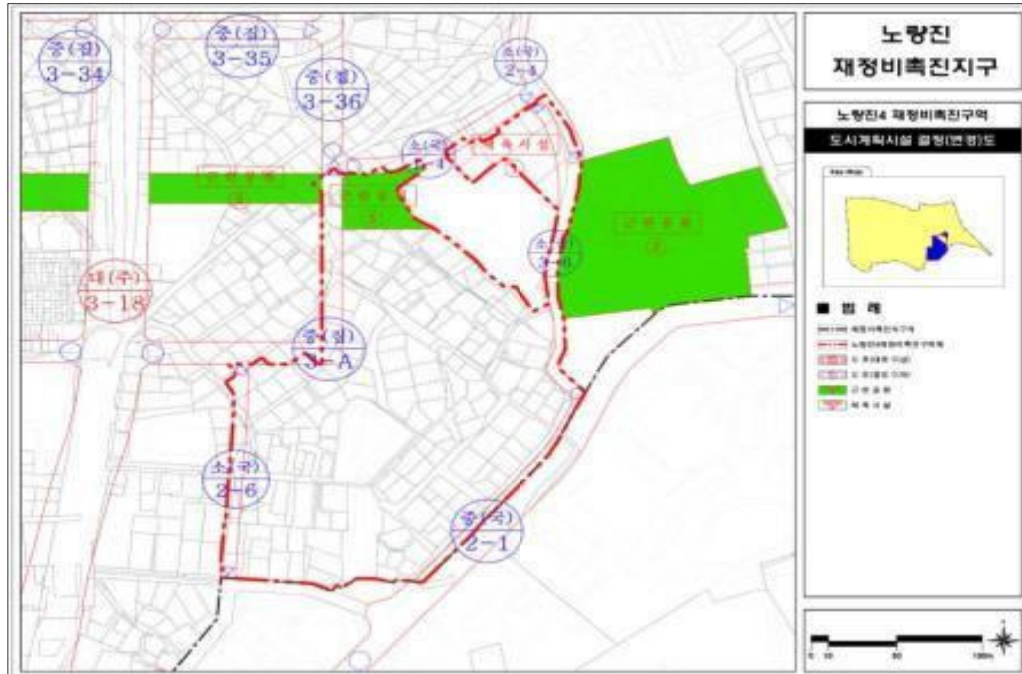
■ 노량진3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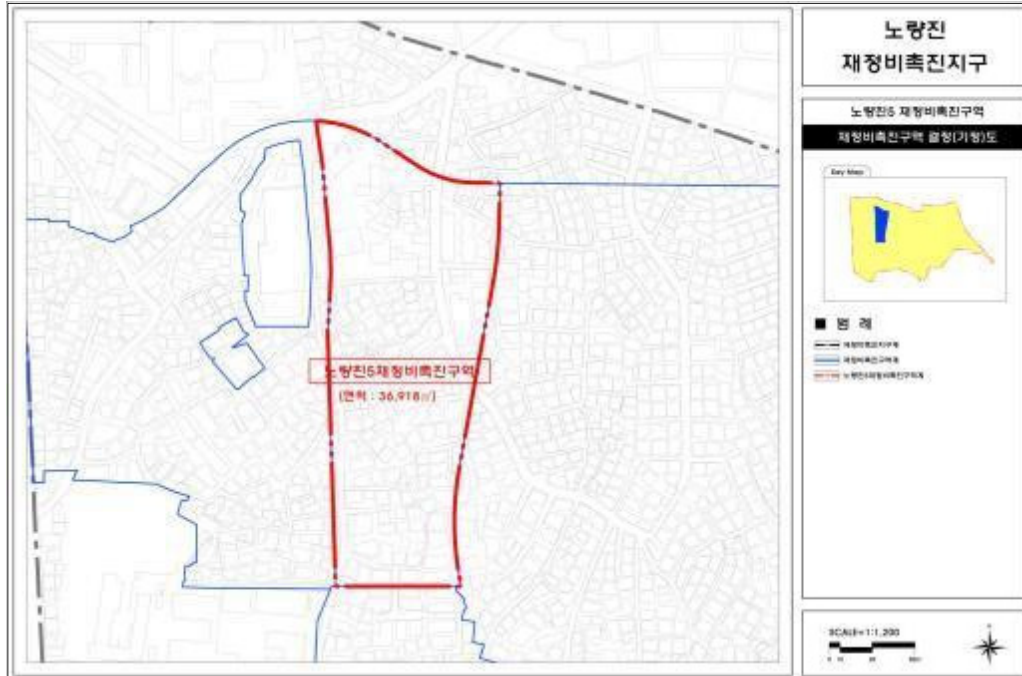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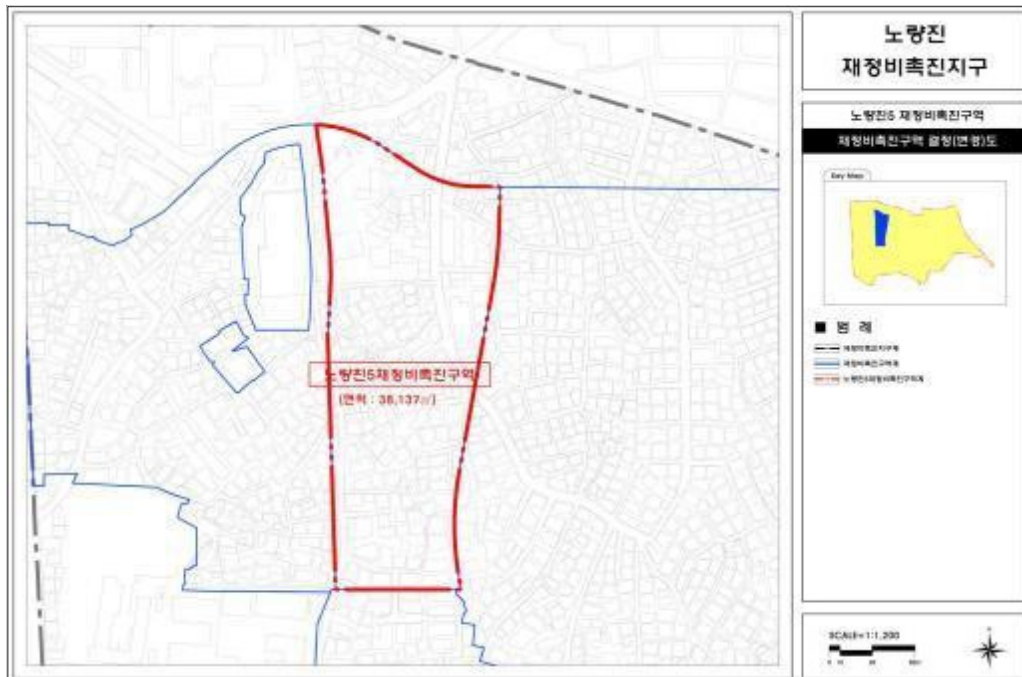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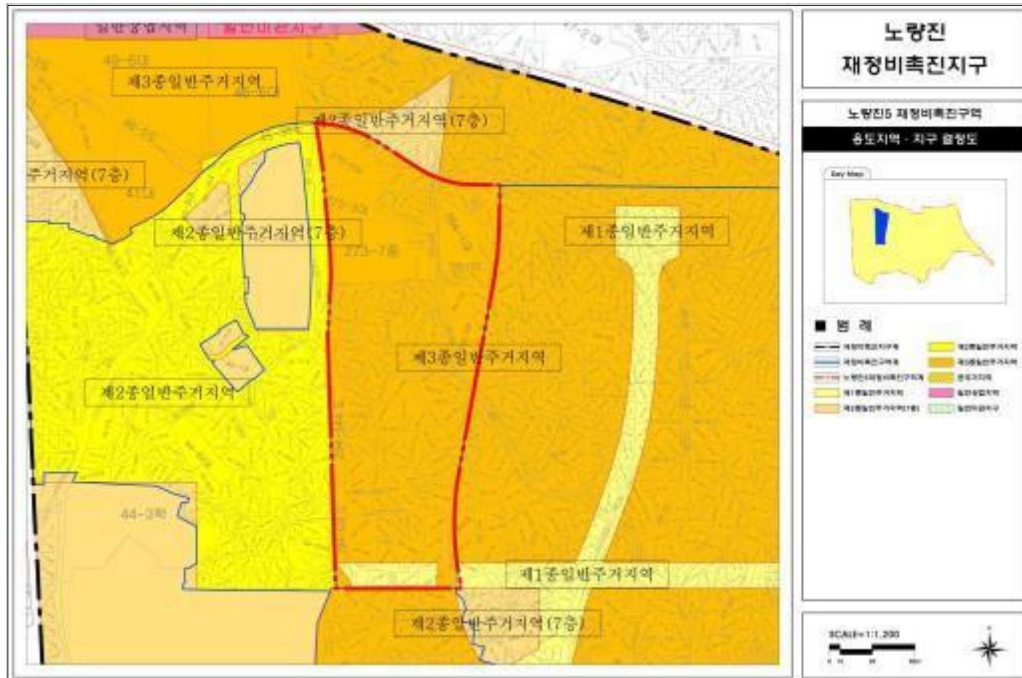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기정)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9호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시 고시 제2016-247호, 2016.8.11.】에 의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영등포구 영등포로 62라길 2 (신길동 39-3번지)	-	25,489.5	25,489.5	-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 가능

2. 정비계획 결정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25,489.5	100.0	
획 지	소 계	21,051.5	82.6	
	획 지	21,051.5	82.6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438.0	17.4	
	도 로	2,418.8	9.5	기부채납
	공 원	1,263.7	4.9	
	사회복지시설	755.5	3.0	어린이집 (토지+건축물 기부채납)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 가능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5,489.5	-	25,489.5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672.3	증)14.7	2,687.0	10.5	-
	제2종일반주거지역	22,719.1	감)21,066.2	1,652.9	6.5	-
	준주거지역	-	증)21,051.5	21,051.5	82.6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8.1	-	98.1	0.4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	한강로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서울역광장~ 구영등포구청	218,200	8,725	양측 12~20	서고 제194호 (84.04.17)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6	35~45	주간선 도로	4,730	한강대교 남단	서울대교 남단	일반 도로	-	건고 349 (79.9.24)	
변경	대로	1	6	35~45	주간선 도로	4,730	한강대교 남단	서울대교 남단	일반 도로	-	-	선형 변경
신설	소로	1	-	10	국지 도로	92	신길동 45-21	신길동 48-9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	8~10	국지 도로	480 (100)	신길동 171-1	영등포동 585-58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	5~10	국지 도로	156 (93)	신길동 31-10	영등포동 50-3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90	신길동 31-27	신길동 41-1	일반 도로	-	영등포고시 59 (97.10.25)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72	신길동 41-1	신길동 47-12	일반 도로	-	영등포고시 59 (97.10.25)	

※ () 는 사업지내 연장임

2) 공원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신길동 183-2번지 일대	-	증)1,263.7	1,263.7	-	-

3) 사회복지시설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 시설	어린이집	영등포동 575-7번지 일대	-	증)755.5	755.5	-	-

4) 학교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길동 184-3	25,901.0	감)41.2	25,859.8	서고98 (78.03.15)	구역내 시설선형 변경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지상층	-	증)106.3	106.3	-
	경비실	지상층	-	증)30.0	30.0	2개소
	폐기물보관시설	지상층	-	증)20.0	20.0	-
	어린이놀이터	지상층	-	증)1,069.5	1,069.5	2개소
	작은도서관	지상층	-	증)456.5	456.5	-
	경로당	지상층	-	증)348.9	348.9	-
	주민운동시설	지상층	-	증)600.0	600.0	-
	주민공동시설	지하층	-	증)1,837.4	1,837.4	-

마. 커뮤니티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커뮤니티시설	게스트하우스	지상1층	-	증)367.6	367.6	
	휘트니스센터	지상2층		증)674.0	674.0	
	문화센터	지상2층		증)1,626.0	1,626.0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후 이 주
신설	신길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25,489.5	획지	21,051.5	신길동 39-3번지 일원	130	-	-	130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신길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25,489.5	획지	21,051.5	신길동 39-3번지 일원	공동 주택 판매 시설등	60% 이하 (51.97%)	454.88% 이하 (454.72%)	115m 35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구분		세대수(세대)		세대 비율(%)		비고	
			합계		999		-		-	
			60㎡이하	소계	668		66.9		-	
				45㎡	78		7.9		임대	
				45㎡	154		15.4		공공임대	
				59㎡	196		19.6		공공임대	
				59㎡	240		24.0		분양	
			85㎡이하	소계	331		33.1		-	
				84㎡	331		33.1		분양	
			85㎡초과	소계	-		-		-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북측 철도변 : 10m ● 동측, 남측 도로변 : 4m ● 서측 인접대지 경계변 : 3m							
비 고			●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B=4m이상 - 기부채납시설(공원) 및 대상지 주변 학교와 대상지 동측 신길역과의 연결 ● 공공기여(기부채납)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토지 755.5㎡ + 건축물(연면적 820㎡) - 공원: 1,263.7㎡ - 도로: 2,418.8㎡							

3) 정비계획 용적률

구 분		산정내용			비고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정비기반시설	-
		25,489.5	21,051.5㎡	4,438.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4,438㎡) - 국공유지 면적(2,316.9㎡) = 2,121.1㎡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환산 면적: 408.5㎡ · 순부담 면적 = 2,121.1㎡ + 408.5㎡ = 2,529.6㎡(9.9%)			-
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	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200% + 230% + 24.88% = 454.88%			-
	허용 인센티브	구분	인센티브 용적률	비고	-
		패키지 허용용적률	230%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필수사항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선택사항	
		신재생 에너지 사용			
	※ 허용 인센티브(에너지효율인증, 친환경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허용용적률 × (1.3α × 가중치) = 315% × (1.3 × 0.122540 × 0.49595) = 24.88%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율 = 2,529.6㎡ / (21,051.5㎡ - 408.5㎡) = 0.122540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비율 = {(200% × 4,339.9) + (800% × 98.1) ÷ 4,438.0} ÷ 430% = 0.49595			-
정비계획 용적률		454.72%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115% 이상 = 230% x 0.5			-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주변과의 조화 속에서 변화 있는 경관연출을 통하여 주변지역과 통일된 경관이미지를 연출하고,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저해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 부득이한 법면 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경처리 - 주차시설을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녹화를 통한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 -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하겠음 ※ 공사시 저감 방안(세부계획 일부) -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방진망설치, 사업대상지내 살수설치, 풍속에 따른 공사 진행여부 판단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임	-
재난방지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구역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목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도모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도로,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조합	- 현황 : 314세대 - 계획 : 999세대 증) : 685세대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교육 환경 보호 계획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보행자도로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 학교 주변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음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추후 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증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도록 하겠음 (현재 사업으로 신·증설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차.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임대주택 건설 계획

건 립 위 치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신길동 39-3번지 일대	78	45㎡	

2)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 완화된 용적률(230%)의 1/2이상인 11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건 립 위 치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신길동 39-3번지 일대	154(44.0%)	45.00㎡	
	196(56.0%)	59.98㎡	
합 계	350	-	

※ 공공임대주택 건립 연면적 = 21,051.5㎡ × 115% = 24,209.22㎡이상 확보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 결정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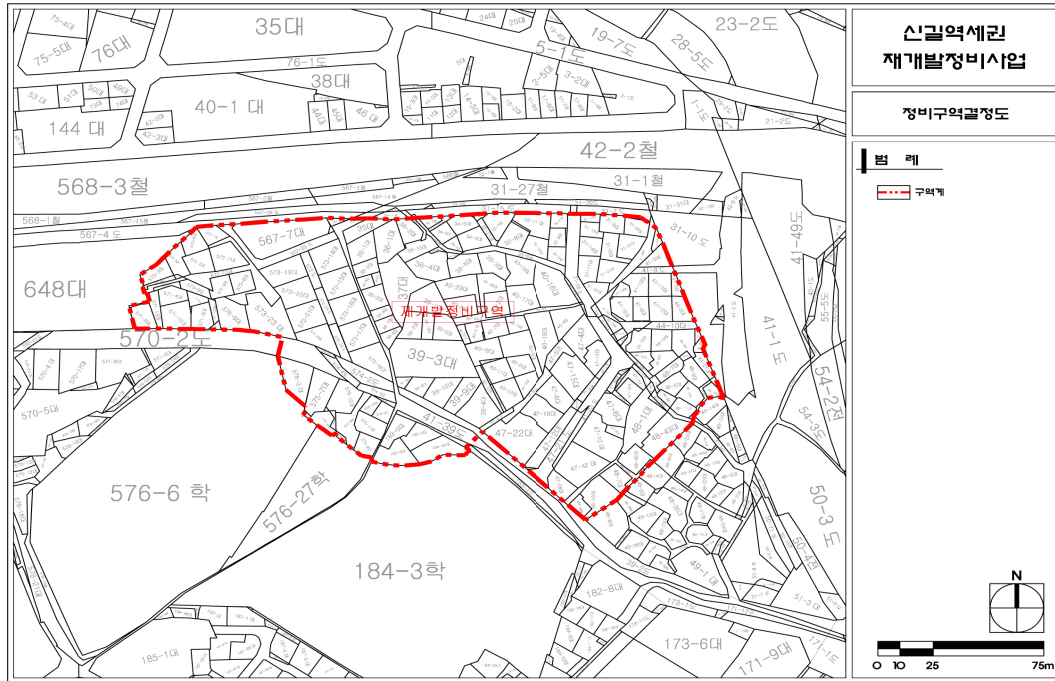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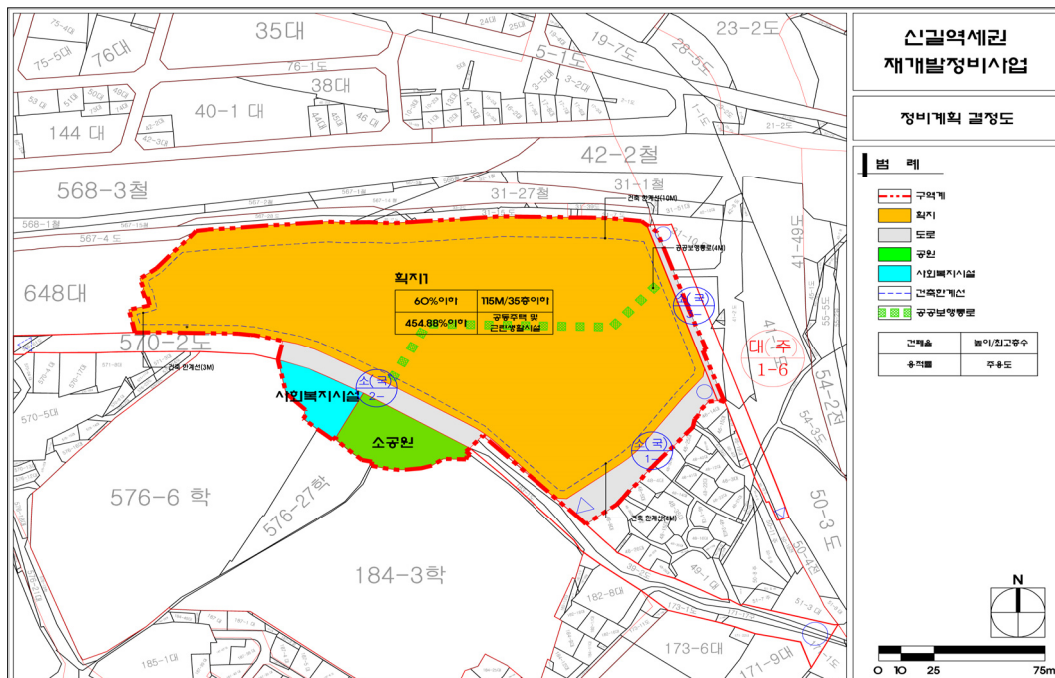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 2133-7071)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50)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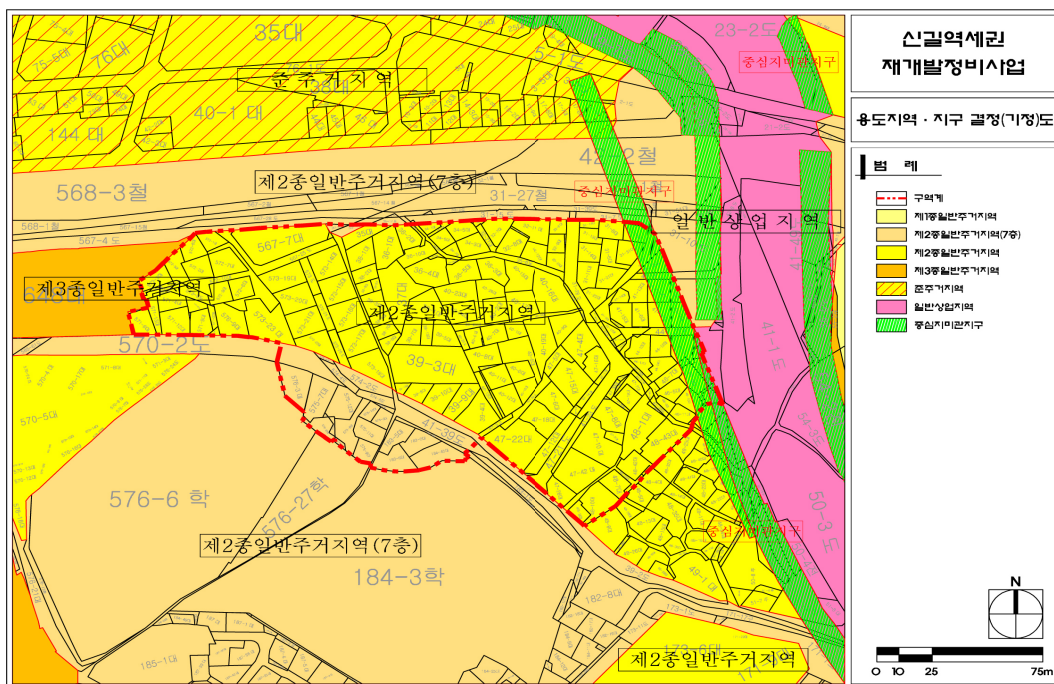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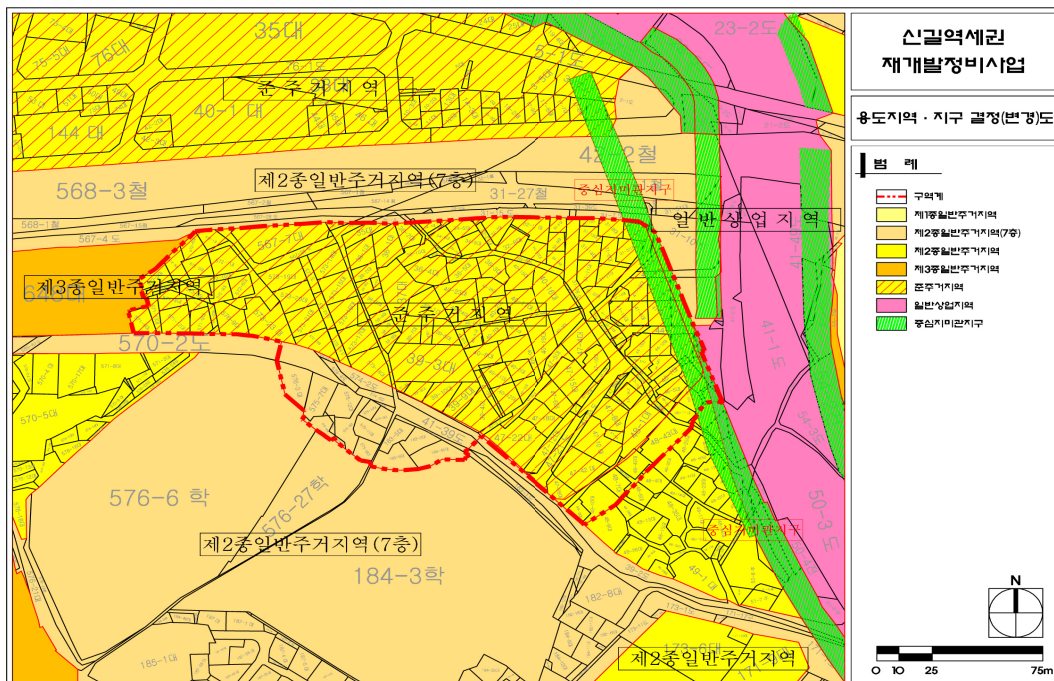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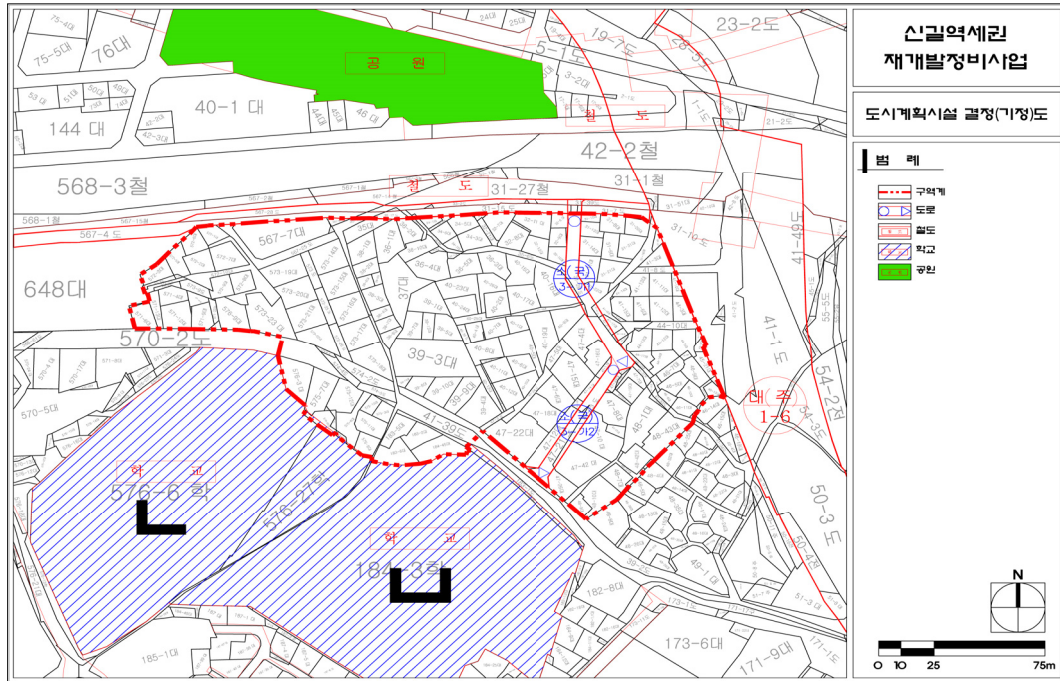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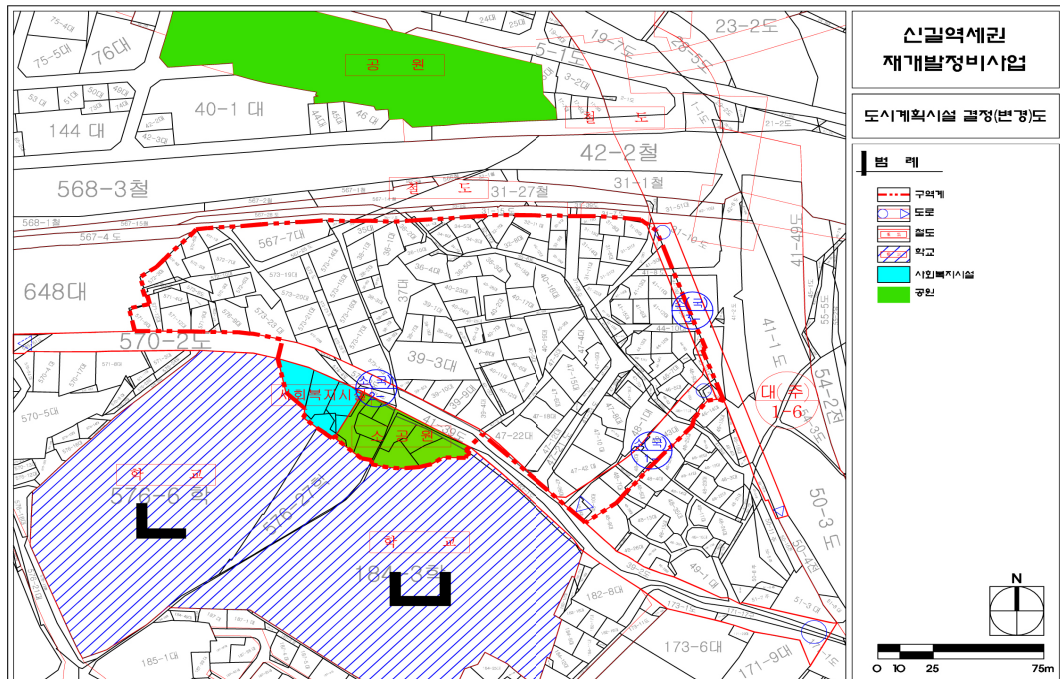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00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 추가 고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를 추가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가.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추가)

시험분야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수수료 (원)	처리기간 (일)	비 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투수성)	치수	KS F 4419	조	9,710	4	
	유색층두께	KS F 4419	조	7,970	4	
	휨강도	KS F 4419	조	31,090	5	
	투수계수	KS F 4419	조	68,620	7	
	투수지속성 시험	시방서	조	126,680	12	추가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5,550	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02-3462-6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04호

서울특별시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환경성, 안전성, 보행성, 자원성, 이용편리성, 지역성 측면을 검토하고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산자락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1. 지정유형 : 생태문화형 보행자전용길
2. 지정대상 : 안산자락길 전구간(L=7.0km)
3. 소재지 : 서대문구 안산 내 8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 북아현동, 봉원동, 연희동, 홍제1동)

4. 운 영 일 : 2018년 7월 1일 부터

5. 지정필요성

- 가. 안산자락길은 전국 최초 ‘순환형 무장애 숲길’이며 보행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도보길로서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나, 일부 이륜차 이용자들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나. 이에 안산자락길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음

6. 주요내용

-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호에 의거 ‘안산자락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함
- 나. 지구 지정 후 해제 시까지 보행자전용길에 진입하는 차마의 운전자에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차마(車馬)의 운전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경우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1), 2) 및 3)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 5)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5만원 - 3만원

[「도로교통법」 제2조17호]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7.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02-2133-2420) 또는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02-330-1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위치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78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허인철	경기도 하남시 수리북로 **-* (덕풍동)	일시 : 2018-4-10 16:13 장소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강동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5m초과	과태료:30만원
임대필	경기도 시흥시 배미골길 10-*, **1호 (목감동)	일시 : 2018-4-19 06:09 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15초과	과태료: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남동주	경기도시흥시소래산길63-1, *0*-*1호 (대야동)	일시 : 2018-2-24 15:57 장소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강동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15m 초과	과태료: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8. 07.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2,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81호

**도시관리계획(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양천구 신정동 1148-9, 10번지 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2008.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1호(2009.09.10.), 제2009-517호(2009.12.17.) 및 제2010-195호(2010.05.27.), 제2010-290호(2010.08.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0호(2010.08.05.)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정동 1148-9, 10번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I. 열람 기간 : 2018. 6.29.~2018. 7.12.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02-2133-4936)

III. 도시관리계획(신정재정비촉진지구 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정동 1148-4번지 일대	89,794.3	서고시 제2010-290호 (2010.08.05.)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9,794.3	-	89,794.3	100.0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3,951.0	-	3,951.0	4.4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3,053.0	-	3,053.0	3.4	
	제3종 일반주거지역	61,060.1	감) 622.0	60,438.1	67.3	
	준 주 거 지 역	21,730.2	증) 622.0	22,352.2	24.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신정동 1148-9,10 번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622.0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혼부부 및 다양한 청년층의 입주를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주1)}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미관지구 (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신월로변	52,680 (8,604)	2,195 (717)	양측12	서고164 (82.4.22)	
기정	-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남부순환로변	84,000 (3,048)	3,500 (254)	양측12	서고164 (82.4.22)	
기정	-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강서로변	24,696 (3,456)	1,029 (288)	양측12	건고519 (73.12.31)	

■ 고도지구 (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강서구 신월, 고강, 화곡, 가양일대	원추표면 (해발 87.86 ~112.86m미만)	12,804,000 (88,492.0)	서고120호 (77.4.22)	

※ () 는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사항임

2.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	8	특수도로	50	신정 1226	신정 1226	보행자 도로	2006. 12.21	5구역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50	신정 1226	신정 1226	일반 도로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내 용	변경 사유
기정	소(특)2-4	· 가구내 차량 진, 출입을 위한 일반도로 변경
변경	소(국)2-4	

나.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최소·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및 공동개발 기준 : 변경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6	· 신정동1148-1, 2, 8, 9, 10번지	1507.3	· 공동개발 권장	
변경		· 신정동1148-1, 2, 8, 9, 10번지	1507.3	· 공동개발 권장 해제	

※ 현재 토지대장 공부상 면적 적용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6	· 공동개발(권장)해제 : 신정동1148-1, 2, 8, 9, 10번지	· 신정동 1148-9, 10번지에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신혼부부 및 다양한 청년층의 입주를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을 위하여 공동개발 권장 해제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

1) 건축물의 불허용도 : 변경 없음

2) 건축물의 권장용도 : 변경 없음

3) 건축물의 지정용도 : 신설

구 분	지정용도	비 고
지정용도	D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비주거시설 : 지상1~2층 설치	· 신정동 1148-9, 10번지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신정동 1148-9, 10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신정동 1148-9, 10 필지에 지정용도 신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나. 건축물의 밀도 : 변경

1) 건축물의 건폐율 : 변경 없음

2) 건축물의 용적률 : 변경

구 분	용도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0% 이하	200% 이하	－	
기정	제3종 일반주거지역	210%이하 (235%이하) ^{주1)}	250% 이하	－	
기정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	
변경		300% 이하	400% 이하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법정이하 ^{주2)}	· 역세권 청년주택 · 신정동 1148-9, 10번지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신규계획 수립기준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09.4)

주1) 공동개발 권장 준수하지 않고 개별필지 개발시 기준용적률 : 235%

주2)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구 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 부지 면적의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기본용적률 400% 이하 부여	· 신정동 1148-9, 10 번지에 한함 · 모든 항목을 충족하 여야 함
주택 건설 기준	비주거비율	· 15%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중2가지이상 의무적으로이행		
주민 공동 시설	주민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미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100㎡ 이 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상2층 : 120.4㎡ 계획)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변경 -기정 : 기준210%, 허용250%이하 -변경 : 기본용적률400%이하/ 상한용적률(법정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신정동 1148-9, 10' 의 용적률 체계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준주거지역 으로 상향시 기준을 준용하여 변경

- 다. 건축물의 높이 : 변경 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 변경 없음
 마.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기준	공공기여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400%이하	부지 면적의 10% 이상 (62.20㎡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10.11% (66.80㎡)	신정동 1148-9, 10번지에 한함

- ※ 공공기여율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 제공함

■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공공기여계획 신설 - 기부채납 : 공공임대주택 토지 지분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공공기여 계획 수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가. 대지내 공지 : 변경 없음
 나. 대지내 통로 : 변경 없음
 다. 차량동선 : 변경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차량 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가로변	·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대지의 입지상 차량출입 불가피할 경우 허용) · 남부순환도로변은 기존 아파트등 기존건축 진출입을 위한 부부적인 차량허용 · 존치관리 2구역과 촉진1구역 사이 소로1류(B=10m)는 부분적인 차량출입 허용 · 존치관리 5구역 내 신정동 1148-9, 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에 따라 소로2-4에 차량 진입·출입 허용	

- ※ 간선부 공동개발(권장 및 자율)시 차량출입을 이면부로 제한

- 라. 환경친화적 요소 : 변경 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V.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00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파인투모로우 주식회사	제135호	2018.6.20.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30길 41, 4층(사당동, 우주빌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03호

시유평허권 처분 공고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유 시유평허권에 대한 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1. 시유평허권의 정의

- 서울특별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입니다.

2. 처분대상 시유평허권(처분종류 : 통상실시권 허락)

구 분	연 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	대기오염물질 흡착 및 제거장치	10-1789233	통상실시권 허락	2017-10-17
특허	2	악취저감 시스템	10-1610667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04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또는 서울시)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평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3. 신청방법

가. 기 간 : 2018.6.29.(금)~7.12(목)(토,일요일 제외한 10일간)

※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접수 가능

나. 방 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도로계획과 담당자 정용훈 앞

- 이메일 : hoon0916@seoul.go.kr

다. 구비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4. 신청자격

○ 대상 시유평특허권(특허)의 실시 가능업체(사업자등록 업체)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계약대상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나. 통상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다만, 시유평특허권 실시료 건적금액은 수의계약신청서에 기재한다.

※ 실시료 산정식 = 제품의 총판매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총판매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평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기본3% 다만, 해당 시유평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이하로 할 수 있음.

라. 실시료 건적금액은 예상금액을 기재할 뿐 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납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마. 공공성·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사.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등본(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유평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이 된 이후에는 제품 홍보를 위해 계약자의 업체명, 대표장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6. 계약 및 실시료 정산 방법

가. 계약대상자가 결정되면 계약대상자에 한해 실시를 위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나. 계약내용

1) 실시기간은 1년(3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으로 한다.

※ 특허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구조물 및 처리시스템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본 공고와 별도로 특허가 반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내로 한다.

2)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및 제품의 판매단가 기준은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수량 및 가격으로 한다.

3) 실시료 견적금액 산정식의 점유율은 계약체결 시 협의하여 확정한다.

4) 기본율은 기본 3%로 하여 년 단위로 실시료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유평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조정할 수 있음.

다. 지정된 처분범위와 견적금액을 내용으로 계약서 확인과 함께 서울시가 날인한 “시유평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2부)”에 계약대상자 날인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한 후 시유평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정산내용

1)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년 단위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확인하여 실시료 납부액을 산정한다.

※ 실시료 산정식 = 제품의 총판매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총판매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평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계약체결시 확정함)

▷ 기본율 : 기본3% (계약 체결시 확정함)

2) 실시료 정산시 실시실적 증빙서류로 총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 1부를 제출한다.

3)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는 해당제품의 재고자산수불부, 거래처별 납품내역서, 제품판매현황자료, 회계장부,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은 과세서류 등 공인된 제품별 판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4) 실시료 매출액 미발생시 사유서 제출 및 증빙서류 첨부한다.

7. 문의처

○ 기타 시유평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권설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담당자 정용훈(☎ 02-2133-8065, hoon091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시유평허권 처분)

신 청 인	① 명 칭 (대 표 자)	(예시) (주) 기업체명 (홍길동)	②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권 리 의 표 시		(예시) 특허등록 제 0000 호		
⑤ 발 명 (고 안) 의 명 칭				
⑥ 처 분 의 종 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 시 범 위		기 간 : 201 . . - 201 . . (년간) 지 역 : 내 용 : (예시) 처분대상 시유평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⑧ 견 적 금 액		(예시) 960천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 청 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당해 시유평허권의 실시예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사 업 계 획 서(예시)

1. 회 사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명)			

2. 회 사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대표자 이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경력	기간	기업체명	주생산 품목	최종직위

4. 인 원 현 황

부서명	경영직	사무직	영업직	...	합계
인사/총무					
생산					
영업					
.					
.					
.					
합계					

5. 시유평허 사업화 추진계획

- ① “당해 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 ②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실시료 견적서

권리의 표시	특허 제 호
발명의 명칭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 원

[예시]

○ 실시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100개
- 제품의 판매단가/단위 : 400천원/개
- 점유율 : 80%
- 기본율 : 3%

※ 해당제품의 경우 특허10-00000호의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점유율 80%로 신청함

○ 실시료 산출금액

- $100\text{개} \times 400\text{천원/개} \times 80\% \times 3\% = 960\text{천원}$

※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판 매 단 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 유 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유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 본 율 : 3%

2018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이사 홍길동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0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주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8가길 48, ***호 (중곡동)	일시: 2018-04-06 10:15 장소: 마곡중앙로 내용: 제한 축하중 1.8톤 초과	처분일: 2018. 5.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8. 7. 31.
노건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51번길 * (신현동)	일시: 2018-04-07 06:31 장소: 가양대교 앞 내용: 제한 축하중 1.4톤 초과, 2회	처분일: 2018. 5. 25. 과태료: 70만 원 납기일: 2018. 7. 31.
전병일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845, ***동 ****호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일시: 2018-04-17 14:25 장소: 여의하류IC 내용: 제한 축하중 1.75톤 초과	처분일: 2018. 5.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8. 7. 31.
조희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남로 **, ***호 (법박동)	일시: 2018-04-30 06:22 장소: 신월동사거리 내용: 제한 폭 0.25m 초과	처분일: 2018. 5.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8. 7. 31.
오해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서로 10, ***동 ***호(삼산동, 임광그대가아파트)	일시: 2016-07-24 10:38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05톤 초과 ※ 사건 2017과50683 관련 수원지검 안산지검 집행위탁분	처분일: 2018. 5.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8. 7.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유수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143번길 **-**, ***호 (행신동)	일시: 2018-02-07 13:37 장소: 여의하류IC 내용: 제한 축하중 1.45톤 초과	처분일: 2018. 3.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8. 5. 31.
박병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102번길 32, *동 ***호 (고강동)	일시: 2018-02-08 10:11 장소: 신월동 내용: 제한 폭 0.15m 초과	처분일: 2018. 3.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8. 5. 31.
김민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봉로12나길 **-* (신길동)	일시: 2018-02-10 15:22 장소: 여의하류IC 내용: 제한 축하중 1.2톤 초과	처분일: 2018. 3.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8. 5. 31.
김영일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5, **동 ***호 (천곡동, 한양2차아파트)	일시: 2018-02-13 05:52 장소: 서서울과학고 앞 내용: 제한 축하중 1.4톤 초과	처분일: 2018. 3.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8. 5. 31.
전형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98번길 8-3, * 동 ***호 (가좌동)	일시: 2018-02-27 10:09 장소: 올림픽대로 내용: 제한 축하중 1.65톤 초과	처분일: 2018. 3.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8. 5. 31.
권동욱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 *동 ***호 (마전동)	일시: 2018-03-02 14:10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08톤 초과	처분일: 2018. 3.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8. 5. 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 2018. 7.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657-7922, 팩스번호 : 02-2657-7950
- 전자우편 :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05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윤*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9번길 1*~8	일시: 2017.05.02. 15:54 장소: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수색로 DMC 레미안아파트앞 사천교32톤 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 실측값:41.05t, 초과값:9.05t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18.05.04 납기일: 2018.06.30
백*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연안8길 2*~12 2*3호 (온양읍)	일시: 2018.04.07. 06:02 장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로 가양대교위 내용: 차량의 폭 초과 실측값:2.85m, 초과값:0.35m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8.05.25. 납기일: 2018.07.31
정*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8길 1*~6 1*2호 (부곡동, 다세대)	일시: 2018.4.12. 06:48 장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구성산회관정류장 모래내고가20톤 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 실측값:24.3t, 초과값:4.3t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8.05.25. 납기일: 2018.07.31.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장*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1-17 1*1동 6*2호 (오남읍, 두산아파트)	일시: 2018.04.12. 14:19 장소: 서울 은평구 갈현동 서오릉로 갈현삼성아파트앞 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 실측값:11.45t, 초과값:1.45t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8.05.25. 납기일: 2018.07.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안*준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3*5번길 37 2*3호 (도화동, 솔베이)	일시: 2018-02-08 11:42 장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하늘공원앞 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 실측값:11.55t, 초과값:1.55t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8.03.27. 납기일: 2018.05.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8. 7.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21,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10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오현웅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일시 : 2018-04-05 20:12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경기88사1367(카고)차량 높이 0.29미터 초과	처분일 : 2018. 5. 25. 과태료 : 30만원
이종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일시 : 2018-04-22 06:15 장소 : 동부간선도로 내용 : 서울06하8656(덤프)차량 축하중 1.65톤 초과	처분일 : 2018. 5. 25. 과태료 : 5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8. 7. 31.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납부 전용(가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해당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 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양주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1-61호(2011.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3호(2015.02.26.)로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5호(2017.03.02.)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5호(2017. 12. 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서울시구간-화랑로) 확장 및 지하철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및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84 일원 (변경없음)

- 시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69 (가스충전소)
- 종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84 (서울시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서울시구간-화랑로) 확장 및 지하철도 설치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변경없음)

- 폭 38→42m, 연장 323m, 면적 18,21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변경)

- (당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15. 02. 26.)~2018. 06. 30.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15. 02. 26.)~2018. 09. 30.
- 바. 자금조달방안 : 붙임2 (변경없음)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변경없음)
-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변경)
 - (당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단,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청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관리청에 인수인계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 시행함.
 -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 자.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 (☎ 031-528-5474),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18호

설계업 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 설계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설계업2종 (E-3-218)	주감성조명헤일로 (110111-6430609)	김좌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741 지층(연희동)	2018.06.2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19호

설계업 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 설계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설계업2종 (E-3-219)	㈜유엘피 (110111-3824227)	장희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167, B동 1723-1, 2호 (문정동, 문정역 테라타워)	2018.06.2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8-5호

2018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

소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직위	(전)구의원		성명	김수규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5,817	0	0	15,817	
부	하천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329번지 282.00㎡	916	0	0	916	변동없음
부	답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339번지 251.00㎡	2,193	0	0	2,193	변동없음
부	답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340-2번지 231.00㎡	2,471	0	0	2,471	변동없음
부	답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343-1번지 189.00㎡	2,211	0	0	2,211	변동없음
부	전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345-1번지 142.00㎡	1,647	0	0	1,647	변동없음
부	도로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437-4번지 64.00㎡	352	0	0	352	변동없음
부	하천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577-3번지 420.00㎡	1,394	0	0	1,394	변동없음
부	제방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577-6번지 322.00㎡	1,069	0	0	1,069	변동없음
부	임야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송산리 산 75번지 9,620.00㎡ 중 4,810.00㎡	3,564	0	0	3,564	변동없음

▶ 건물(소계)			867,757	0	0	867,757	
본인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2동 가든아파트 대지 74.85㎡ 건물 115.40㎡	270,930	0	0	270,930	변동없음
본인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대지 958.00㎡ 중 27.10㎡ 건물 958.00㎡ 중 45.31㎡	265,000	0	0	265,000	변동없음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아파트 건물 95.45㎡ 중 48.67㎡	128,012	0	0	128,012	변동없음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아파트 건물 95.45㎡ 중 46.78㎡	123,015	0	0	123,015	변동없음
배우자	아파트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우남콤비타운아파트 건물 60.00㎡	63,000	0	0	63,000	변동없음
부	단독주택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대지 821.00㎡ 건물 189.50㎡	17,800	0	0	17,8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6,431	0	0	36,431	
본인	자동차	2008년식 포터 배기량(2,950cc)	472	-	-	472	변동없음
본인	자동차	2017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자가용 LP이왜건 12인승 배기량(2,359cc)	24,000	-	-	24,000	변동없음
모	자동차	2014년식 k5 배기량(1,999cc)	11,805	-	-	11,805	변동없음
장남	자동차	2001년식 sm5 배기량(1,998cc)	154	-	-	154	변동없음
본인		중소기업은행 5, 우리은행 236(1,127 감소), KB증권 30, AIA생명보험주식회사 48,845, 국민은행 8,469(92,696 감소), 농협중앙회 2,465,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502	155,375	2,478	96,301	61,552	직원 및 일용직 급여 지급으로 예금액 감소
배우자		처브라이프생명 12,865, DB손해보험(주) 6,480, 국민은행 17,332, 농협중앙회 8, 신한생명보험 16,210, 우리은행 8,921, 교보생명보험 1,944	63,760	0	0	63,760	
부		고창신협 5,648, 고창 30,030, 고창 10,000, 농협중앙회 22,494, 고창신협 40,000	108,172	0	0	108,172	
모		고창신협 38, 고창신협 25,000, 농협중앙회 145, 고창 35,000, 고창 20,030	80,213	0	0	80,213	
장남		신한은행 68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8,699, 신한금융투자(주) 180, 동양생명보험 3,664, 농협중앙회 100, (주)KEB하나은행 111, 우리은행 1,888, 국민은행 5, ING(네덜란드)생명보험 10,151, NH투자증권 25, DB손해보험(주) 5,207	40,712	0	0	40,712	
장녀		국민은행 13,374, (주)KEB하나은행 574, DB손해보험(주) 10,200, 농협은행 160, 현대해상화재보험 12,000, 우리은행 44	36,352	0	0	36,352	

▶ 유가증권(소계)			228	0	36	192	
본인	상장주식	한국전력 6주	228	0	36	192	추가하락
▶ 채권(소계)			135,000	0	0	135,000	
본인		사인간채권	80,000	0	0	80,000	변동없음
배우자		사인간채권	5,000	0	0	5,000	변동없음
장남		사인간채권	50,000	0	0	50,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507,203	0	0	507,203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77,925, 국민은행 221,185	299,110	0	0	299,110	변동없음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2동 가든아파트 임대보증금	10,000	0	0	10,000	변동없음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보성다이아빌 임대보증금	89,000	0	0	89,000	변동없음
본인	기타	현대자동차	10,229	0	0	10,229	변동없음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5,163	5,163	0	0	5,163	변동없음
장남		사인간채무	80,000	0	0	80,000	변동없음
장남	금융기관채무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0,300, 우리은행 3,401	13,701	0	0	13,701	변동없음
총 계			1,032,614	2,478	96,337	938,755	증 감 액 : -93,859천원 (가액변동: -36천원)

소속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위	(전) 구의원	성명	조민국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30,000	0	0	30,000	
본인	다가구주택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건물 109.17㎡	30,000	0	0	30,000	변동사항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3,950	0	0	23,950	
본인	자동차	2016년식 SM6 배기량(1,461cc)	23,950	－	－	23,950	변동사항없음
▶ 예금(소계)			6,507	5,319	2,765	9,061	
본인		신한은행 53, 우리은행 2,677(1,556 감소), 우체국 8, 길음뉴타운 56(1 증가), 국민은행 151(143 증가)	4,357	1,287	2,699	2,945	가계비용 지출
배우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585(135 증가), 국민은행 174(24 감소), 신한은행 1(42 감소), 한국카카오은행(주) 3,486(3,486 증가), 한국산업은행 1, 농협은행 6	1,698	3,621	66	5,253	
모		광주은행 853(411 증가), 국민은행 10	452	411	0	863	
▶ 채무(소계)			46,482	0	2,220	44,262	
본인	금융기관채무	롯데캐피탈 15,436(427 감소),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18,934(814 감소), 비엔케이캐피탈(주) 9,892(979 감소)	46,482	0	2,220	44,262	보증으로 상환
총 계			13,975	5,319	545	18,749	증감액 : 4,774천원

소속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위	(전)	성명	정병호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124,000	0	0	124,000	
본인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건물 65.00㎡	124,000	0	0	124,000	가액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8,800	0	0	18,800	
본인	자동차	2002년식 NEW그랜저XG 배기량(2,493cc)	3,000	-	-	3,00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자동차	2002년식 스타렉스9인오토 배기량(2,476cc)	800	-	-	80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자동차	2016년식 포터2 배기량(2,497cc)	15,000	-	-	15,000	가액변동 없음
▶ 예금(소계)			54,852	4,796	8,977	50,671	
본인		우리은행 100(2,805 감소), 신한은행 1,203(1 감소), 갈현동 0(900 감소), 새마을금고 316, NH투자증권 2, (주)KB손해보험 5,635(260 증가), 농협은행 4,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5,356, 국민은행 40, 농협중앙회 16, 구산동 138, 은평신협 777(724 증가), (주)KEB하나은행 3, 한국투자증권 799(113 감소), 교보생명보험 115(77 증가), 갈현동 1(1 증가)	17,262	1,162	3,919	14,505	생활비 등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3, 국민은행 7, 농협중앙회 4, (주)KB손해보험 1,277(128 증가), 농협은행 216(1,542 감소), 우리은행 345(168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885, 라이나생명보험 778(334 증가)	4,427	682	1,594	3,515	
모		농협중앙회 9,391(495 증가), 매곡신협 15,2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841(2,500 감소), 매곡신협 2,095(2,002 증가), 한미음 0(18 감소)	30,548	2,497	2,518	30,527	
장남		현대해상화재보험 1,095(142 증가), 갈현동 33(855 감소), 은평신협 33(1 증가), 국민은행 23(22 감소), (주)KEB하나은행 10, 우리은행 0(69 감소), 은평중앙신협 1, 새마을금고 9, 교보생명보험 920(312 증가)	2,615	455	946	2,124	

▶ 채권(소계)			200,000	0	0	20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180,000	0	0	180,000	
장남		사인간채권	20,000	0	0	20,000	
▶ 채무(소계)			167,022	0	2,551	164,471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140,0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0(2,255 감소)	142,255	0	2,255	140,000	일부상환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71(296 감소), SBI저축은행 24,000	24,767	0	296	24,471	일부상환
총 계			230,630	4,796	6,426	229,000	증감액: -1,630천원

소속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위	(전)	성명	권순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212,197	0	0	212,197	
배우자	답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572번지 50.00㎡	915	0	0	915	
배우자	답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720번지 1,638.00㎡	29,489	0	0	29,489	
배우자	전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793번지 1,279.00㎡	17,906	0	0	17,906	
배우자	답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880번지 145.00㎡	7,612	0	0	7,612	
배우자	답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881-2번지 99.00㎡	4,583	0	0	4,583	
배우자	답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881-4번지 249.00㎡	13,072	0	0	13,072	
배우자	답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881-5번지 1,077.00㎡	56,542	0	0	56,542	
배우자	답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881-6번지 292.00㎡	15,330	0	0	15,330	
배우자	답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881-7번지 135.00㎡	7,087	0	0	7,087	
배우자	답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1014번지 814.00㎡	15,140	0	0	15,140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산 37-1번지 37,345.00㎡	33,647	0	0	33,647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산 37-2번지 5,745.00㎡	5,285	0	0	5,285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함안군 대신면 서촌리 산 37-3번지 6,076.00㎡	5,589	0	0	5,589	
▶ 건물(소계)			460,000	0	0	460,0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힐스테이트1차 건물 84.00㎡	300,000	0	0	300,000	
배우자	단독주택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대지 125.40㎡ 중 62.70㎡ 건물 191.44㎡ 중 95.72㎡	160,000	0	0	16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7,000	0	0	17,000	
배우자	자동차	2009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800cc)	17,000	-	-	17,000	
▶ 예금(소계)			422,531	86,537	6,386	502,682	
본인		우리은행 12,184(8,571 증가), 신한은행 716(81 감소), 삼성증권 1, (주)KB손해보험 6,355(249 증가), 농협은행 3,000(3,000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5,224, 국민은행 20,265(8,362 증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134,000(4,00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1,150(150 증가), ING(네덜란드)생명보험 47(47 증가)	178,644	29,308	5,010	202,942	본인 적금 및 배우자 주주배당금 수령으로 증가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54(293 감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67(1,076 감소), 수협은행 39, 미래에셋대우(주) 177,022(13,482 증가), 국민은행 216, 삼성화재해상보험 891(149 증가), (주)KB손해보험 6,300(180 증가), 씨티은행 395, 메트라이프생명보험 63,681(897 증가), 농협은행 50,975(42,521 증가), 우리은행 0(7 감소)	243,887	57,229	1,376	299,740	
▶ 유가증권(소계)			52,189	350	568	51,971	
본인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모뎀 6,500주	3,250	0	0	3,250	유가증권 시세 변동
배우자	상장주식	사조오양 0주, 대한전선 12주, 맵스리얼티1 11,370주, 메리츠금융지주 0주, 에스텍파마 410주, 정산애강 0주, 메리츠화재 0주	48,789	350	568	48,571	
배우자	비상장주식	지인텍 300주	150	0	0	150	
▶ 채무(소계)			117,065	0	40,366	76,699	
본인	금융기관채무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5,000	15,000	0	0	15,000	배당금으로 채무 상환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주)KEB하나은행 61,699(323 감소), 농협은행 0(40,043 감소)	102,065	0	40,366	61,699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150,000	0	0	150,000	
배우자	출자	법무법인(유한)한결, 출자가액: 150,000천원, 지분비율: 5.35%, 연간매출액: 17,700,000천원	150,000	-	-	150,000	
총 계			1,196,852	86,887	-33,412	1,317,151	증감액: 120,299천원 (가액변동: -218천원)

소속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위	(전)		성명	이봉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530,000	0	0	53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장미APT 건물 83.90㎡	280,000	0	0	280,000	변동없음
본인	상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세이브존 지하대지 4,919.70㎡ 건물 15.55㎡	250,000	0	0	250,0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9,544	0	1,507	8,037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뉴투싼 배기량(2,000cc)	9,544	0	1,507	8,037	가액변동
▶ 예금(소계)			123,627	31,294	59,588	95,333	
본인		우리은행 21,798(20,615 증가), 고양동부 109(3 증가), 농협은행 5, 국민은행 887(1 증가), (주)KEB하나은행 17, 삼성화재해상보험 34,850(594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사업부 5,328(281 증가)	41,500	21,494	0	62,994	지출액 증가로 인한 감소
배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공제사업부 0(22,420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7,521(207 증가), 디지비생명보험(주) 4,434, 한국카카오은행(주) 2,720(2,720 증가), 우리은행 15,323(2,042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0(28,317 감소), 중앙신협 30	79,880	9,736	59,588	30,028	
장녀		국민은행 27, 우리은행 2,280(60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4(4 증가)	2,247	64	0	2,311	
▶ 채무(소계)			291,148	0	10,118	281,030	
본인	금융기관채무	삼성카드 0(283 감소), 우리은행 211,000, 새마을금고 60,000(9,835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10,030	291,148	0	10,118	281,030	채무 일부변제
총 계			372,023	31,294	50,977	352,340	증감액 : -19,683천원 (가액변동 : -1,507천원)

소속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위	(전)의원(前)		성명	김정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1,391,676	285,800	242,900	1,434,576	
본인	단독주택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대지 61.72㎡ 중 30.00㎡ 건물 106.00㎡ 중 52.00㎡	26,000	0	0	26,000	변동없음
본인	아파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한신휴플러스타운 건물 59.87㎡	320,000	0	0	320,000	변동없음
본인	오피스텔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대지 9.56㎡ 건물 91.69㎡	223,040	0	0	223,040	변동없음
배우자	아파트 (분양권)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e편한세상 건물 0.00㎡ (건물 84.86㎡ 감소)	242,900	0	242,900	0	변동없음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e편한세상 건물 84.86㎡ (건물 84.86㎡ 증가)	—	285,800 (285,800)	0	285,800	소유권전환
장남	기타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시니어캐슬클라시온 건물 56.34㎡	100,000	0	0	100,000	변동없음
차남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대지 96.00㎡ 건물 55.54㎡	379,736	0	0	379,736	변동없음
차남	단독주택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건물 42.00㎡	100,000	0	0	100,0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433	0	0	8,433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sm5 배기량(1,998cc)	8,433	—	—	8,433	변동없음
▶ 예금(소계)			73,635	9,773	23,962	59,446	
본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1,304(69 증가), 신한은행 10, 우리은행 1,590(1,467 증가), 중소기업은행 84(21,414 감소), 우체국 8,198(1,337 증가), 농협은행 49, (주)KEB 하나은행 373(535 감소), 교보생명보험 3,338,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0, 삼성화재해상보험 1,199(100 증가)	35,131	2,973	21,949	16,155	예금, 보험 등 만기에 따른 해지
배우자		국민은행 22,596(3,888 증가), 신한은행 520(848 감소), 우체국 1, 삼성생명보험 2,124, 농협은행 0(815 감소), 라이나생명보험 2,657(60 증가)	25,613	3,948	1,663	27,898	
장남		신한은행 1, 한국카카오은행(주) 51(51 증가), 우리은행 2,500(65 증가)	2,436	451	335	2,552	

차남		농협은행 44(2 감소), 국민은행 528(63 증가), 삼성생명보험 8,822(382 증가), 우체국 37, 신한은행 3,242(1,792 증가)	10,438	2,237	2	12,673	
장녀		국민은행 0(13 감소), 농협은행 4, 한국카카오은행(주) 164(164 증가)	17	164	13	168	
▶ 채무(소계)			1,078,765	220,493	172,532	1,126,726	
본인	금융기관채무	중소기업은행 154,000, (주)KEB하나은행 25,828(1,073 증가), 교보생명보험 1,200	179,955	1,073	0	181,028	부동산 구매에 따른 대출 등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한신희플러스타운 임대보증금	280,000	0	0	280,000	변동없음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12,000, 삼성생명보험 1,630, 신한은행 0(171,480 감소), 농협은행 219,420(219,420 증가)	185,110	219,420	171,480	233,050	부동산 구매에 따른 대출 등, 일부상환
장남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93,992(8 감소)	94,000	0	8	93,992	일부 상환
차남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99,700, 삼성생명보험 5,000, 신한은행 78,956(1,044 감소)	184,700	0	1,044	183,656	일부 상환
차남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임대보증금	155,000	0	0	155,000	변동없음
총 계			394,979	75,080	94,330	375,729	증감액 : -19,250천원

소속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위	(전)보건복지위원장(前)		성명	송도호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321,000	0	0	321,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동 두산아파트 건물 84.87㎡	321,000	0	0	321,0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203	0	0	10,203	
본인	자동차	2012년식 산타페 배기량(2,000cc)	10,203	-	-	10,203	변동없음
▶ 예금(소계)			279,269	117,373	4,548	392,094	
본인		미래에셋생명보험 22,496, 은천 3,933(82 증가), 관악신협 25,308, 현대라이프생명보험 20,493, 신한은행 4,535(712 증가), 우리은행 175,981(104,970 증가), 관악신협 10,000, 우체국 6,333(599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238(536 증가), 농협은행 9, 신한생명보험 7,608,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3,848, 국민은행 74, 교보생명보험 40,308(30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5,039(38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공제사업부 1,800(150 증가)	233,472	107,130	599	340,003	급여 예치,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
배우자		신한은행 15, 농협중앙회 7,903(6,858 증가), 관악신협 1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87, 교보생명보험 40,252(1,012 증가), 수협중앙회 3	41,402	7,870	0	49,272	
장남		신한은행 199(2,036 감소), 국민은행 145(136 증가), 관악신협 54	2,298	136	2,036	398	
장녀		(주)KEB하나은행 215(556 감소), 관악신협 1,550(1,550 증가), 농협은행 10, 현대해상 화재보험 152(1,147 감소), 우리은행 0(14 감소), 한국카카오은행(주) 400(400 증가), 신한은행 94(91 증가)	2,097	2,237	1,913	2,421	
총 계			610,472	117,373	4,548	723,297	증감액 : 112,825천원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8-5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76호(2017.07.27.)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고시되고, 종로구공고 제2018-31호(2018.01.09.)로 실시계획 열람 . 공고한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추진 중 건물조서 및 영업권 조서의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66-2(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2) 명 칭 :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 43.7㎡(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구조·규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 붙임 (변경)

사. 공고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 2148-2862)

(변경 전)

토 지 조 서

-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창신동	266-2	대	43.7	김옥주	7분의 2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박재범	7분의 3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박재현	7분의 2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건 물 조 서

-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창신동	266-2	건물	목조 1층	30.6	김옥주	4분의 2	서울 강남구 일원동 627-6				
						박재범	4분의 1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1				
						박재현	4분의 1	서울 강남구 일원동 627-6				

영 업 권 조 서

-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창신동	266-2	중개업	신원공인중개 사사무소	1식	김영준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음식업	뫼난이닭강정	1식	김순옥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변경후)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사 업 명: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창신동	266-2	대	43.7	김옥주	7분의 2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박재범	7분의 3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박재현	7분의 2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건 물 조 서☐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사 업 명: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창신동	266-2	건물	목조 1층 (블럭보강 섬글지붕)	30.6	김옥주	4분의 2	서울 강남구 일원동 627-6				무단 증축 0.8㎡
						박재범	4분의 1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1				
				경량 철골	0.8	박재현	4분의 1	서울 강남구 일원동 627-6				

영 업 권 조 서☐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사 업 명: 동묘앞역 사거리 공공공지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창신동	266-2	중개업	신원공인중개 사사무소	1식	조익환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음식업	뫼난이닭강정	1식	김순옥	서울 종로구 창신동 266-2				

◆ 종로구고시 제2018-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3-93호(2013.12.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종로구공고 제 2018-484호(2018.5.24.)로 실시계획 열람·공고한 「홍지동 36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28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47-9~36-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홍지동 36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

다. 사업규모 및 내용 : 도로개설 폭 6m, 연장 4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사. 공고방법 : 시보게재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도로과(☎ 02-2148-3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 홍지동 36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홍지동	45-1	대	27	정혜경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0-37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택역촌동영업지원 센터)	근저당	
2	종로구 홍지동	47-9	도	16	종로구						
3	종로구 홍지동	70-1	구	43	종로구						
4	종로구 홍지동	36-4	도	56	유구창	1/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24				
					학교법인 상명학원	1/2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				
5	종로구 홍지동	36-5	대	71	김효정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1길 1 (홍지동)	하나캐피탈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20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근저당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 홍지동 36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홍지동	45-1	건물 ㈜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1층)	8.6	㎡	정혜경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0-37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택역촌동영업 지원센터)	근저당	
			주차장	평스라브 지붕	36	㎡							
			담장	판넬, H2	3.5	m							
			전력 량계		1	식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종로구 홍지동	36-5	담장	적벽돌 H1.5	7.1	m	김효정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1길 1(홍지동)	하나캐피탈 (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20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 사옥)	근저당	
				콘크리트 H1.4	3.2	m							
				적벽돌 H1.8	0.5	m							
			화단	적벽돌 H0.6	3.2	m							
				적벽돌 H0.65	3	m							
			웬스	메쉬웬스 H0.95	1.7	m							
			바닥 포장	콘크리트	64	m ²							

영 업 권 조 서

-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 사 업 명 : 홍지동 36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홍지동	45-1	일반 음식점	팔선생	1식	정혜경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0-37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택역촌동영업지원 센터)	근저당	

◆ 용산구고시 제2018-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9호(2015.08.06)로 도시계획시설(가로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7-71호(2017.06.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된 ‘한강로가로공원(가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용산구공고 제2018 -516호(2018.05.31)로 열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28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325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명칭 : 한강로 가로공원(가칭)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적 : 1,076.3㎡

○ 내용 : 가로공원 신규 조성

라. 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 성명(명칭) : 엘에스케이플러스(주) 대표이사 강지훈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9. 7.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따로붙임

사. 관계서류 비치 :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02-2199-7603)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부.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사업시행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한강로 3가	65- 325	대	3,404.6	1,076.3	(주)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66 (을지로2가)				
합계				3,404.6	1,076.3						

◆ 용산구고시 제2018-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0호』와 『용산구고시 제2016-123호』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

단위계획 및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용산구 한강로3가 65-9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한강로3가 65-9일원 정비사업공사의 시행자 엘에스케이플러스주식회사 대표 강지훈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토목과(☎ 2199-785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28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용산구 한강로3가 65-9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한강로3가 65-9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사업

라. 사업의 규모

1) 중(국) 3-10호선 : 폭 12~13m, 연장 63m

2) 중(국) 3-15호선 : 폭 11~12m, 연장 123m

마. 사업 시행자 : 엘에스케이플러스(주) 대표 강지훈(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0길 83)

바.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9. 7.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물건조서 : 별첨

※ 별첨

토 지 조 서

■ 총괄집계표 (전체)

단위 : 필지 / 면적(m²)

구분	사유지(필지 / 면적))	계 (필지 / 면적)	비 고
계	3 / 656.4	3 / 656.4	
대	2 / 482.2	2 / 482.2	
철	1 / 174.2	1 / 174.2	

■ 편입토지조서 (사유지)

번호	지번	지목	면 적(m ²)				소 유 주		관 계 인		
			지적 면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소 계	중로 3-10	중로 3-15					
1	65-325	대	3,404.6	371.1	106.35	264.75	강경식	경기도 과천시 뒷골로 80-26 (과천동)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수탁자
2	65-474	철	174.2	174.2	9.8	164.4	강경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9-69 (한강로3가)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수탁자
3	65-519	대	111.1	111.1	-	111.1	강경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267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수탁자
계			3,689.9	656.4	116.15	540.25					

◆ 용산구고시 제2018-74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53호(2002.06.27.)로 결정(변경)된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용 산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태원동 130-11호 외 3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공동개발(권장) 결정에 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

가구번호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C-g	기정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이태원동 130-11호	122.0	공동개발(권장)	
			이태원동 130-12호	268.8		
			이태원동 130-35호	256.8		
			이태원동 130-13호	20.5		
C-g	변경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이태원동 130-11호	122.0	공동개발(권장)	
			이태원동 130-12호	265.9		
			이태원동 130-48호	2.9		분할에 따른 신규(추가)
			이태원동 130-35호	256.8		
			이태원동 130-13호	20.5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동개발(권장) 변경 (4필지 → 5필지)	· 이태원동 130-12호에서 필지 분할된 130-48호에 따라 공동개발(권장) 사항을 변경

○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지형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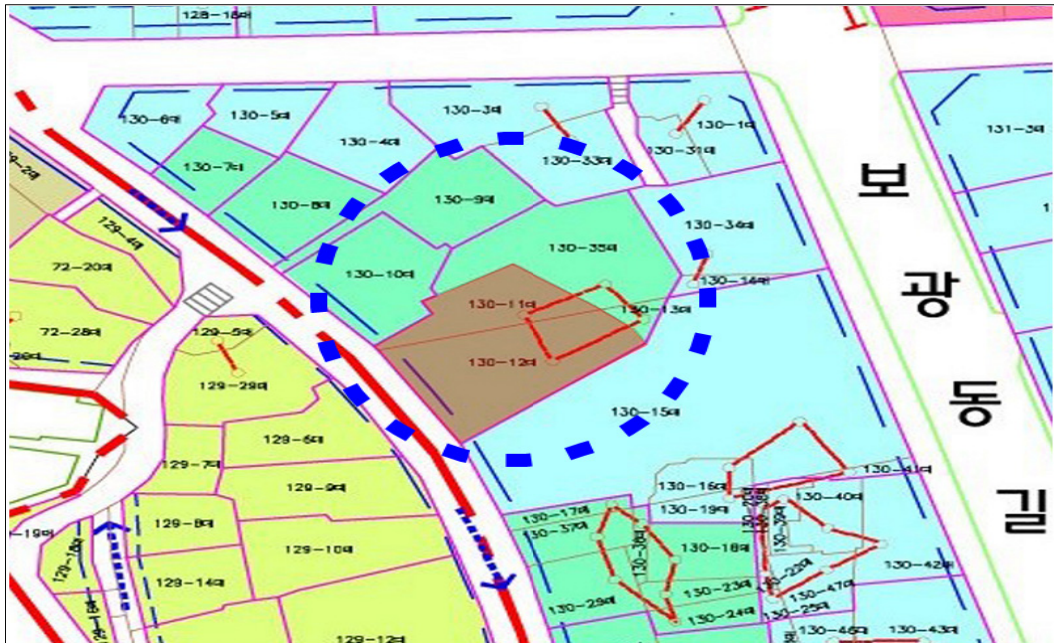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199-742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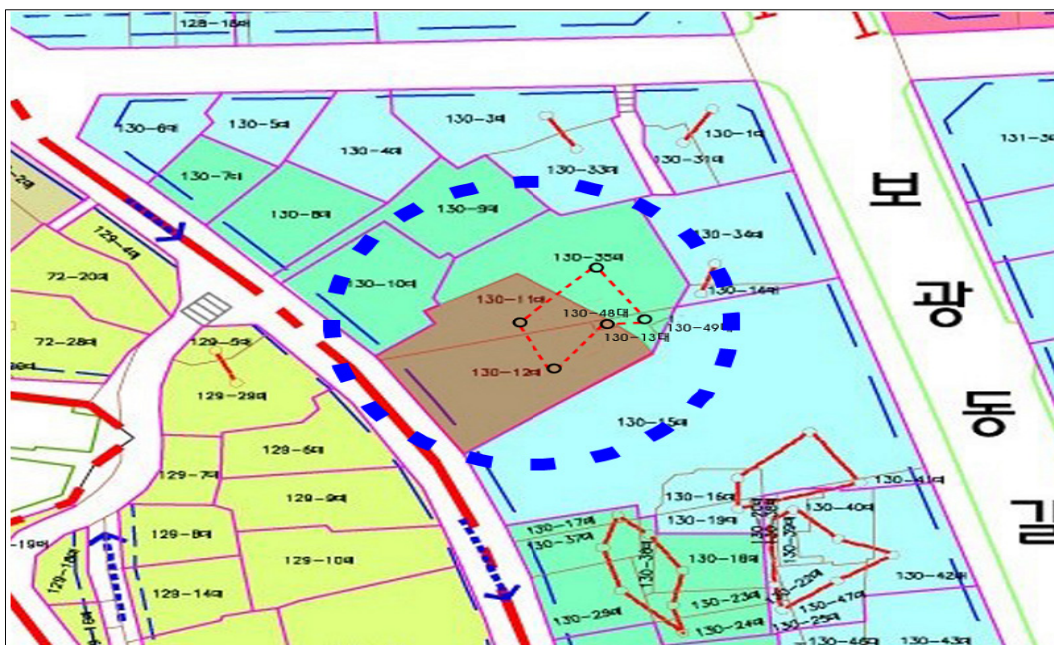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도면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



◆ 도봉구고시 제2018-76호

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48호(2017.12.07.)로 결정(변경) 고시 된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사항 변경)·고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도 봉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구역 내 도봉동 590-2번지 외 9필지(도봉동 421, 422-1, 422-3, 422-4, 422-5, 422-6, 422-10, 422-13, 590번지)의 변경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사항 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위 치	면 적 (㎡)	계획내용		위 치	면 적 (㎡)	계획내용	
도봉동 421대	218.00	549	공동개발 (지정)	도봉동 421대	218.00	971.9	공동개발 (지정)
도봉동 422-1대	255.00			도봉동 422-1대	255.00		
도봉동 422-3전	76.00			도봉동 422-3전	76.00		
도봉동 422-6전	212.00	512.3	공동개발 (지정)	도봉동 422-6전	212.00		
도봉동 590-2대	108.90			도봉동 590-2대	108.90		
도봉동 590대	191.40			도봉동 422-10대	3.00		
도봉동 422-5대	80.0	-	공동개발 (권장)	도봉동 422-13대	1.00	271.4	공동개발 (권장)
도봉동 422-10대	3.00	-	구유지	도봉동 422-4전	98.00		
도봉동 422-13대	1.00	-	구유지	도봉동 590대	191.40		
도봉동 422-4전	98.00	-	단독 개발	도봉동 422-5대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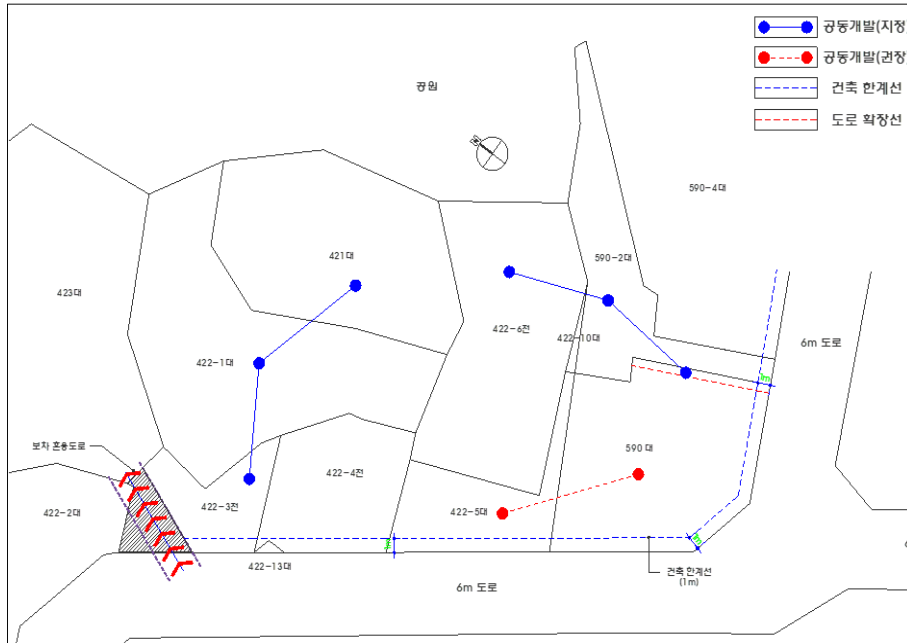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 붙임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 관계도면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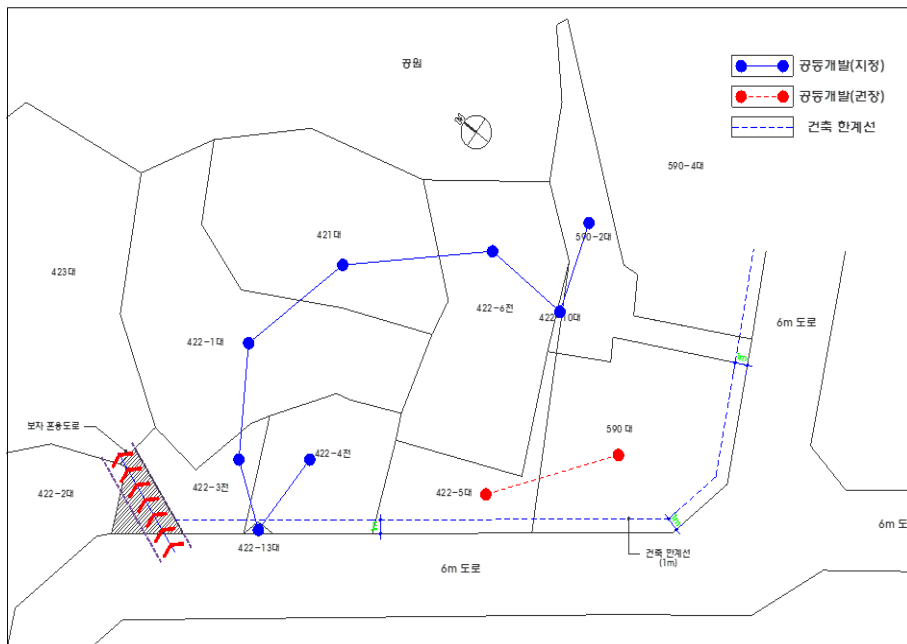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도봉구청 주택과(☎ 2091-3514)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 노원구고시 제2018-72호

도시계획시설(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8-21호(2018.2.22.)로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하였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사업의 명칭 :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2.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35-1, 1035-2, 1035-5

3. 사업의 내용

- 면 적 : 763㎡(부지면적)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790㎡

4.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5. 변 경 사 항 : 물건조서 추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7. 고 시 방 법 : 서울시보 및 노원구보 게재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 붙임

9.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 보건위생과(☎ 02-2116-4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지목	실제 이용 상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상계동 1035-1	토지	전	·	349		증)349	홍경모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3, 104-0000(도곡동, 삼성래미안(아))				사유지
2	상계동 1035-2	토지	전	·	386		증)386						사유지
3	상계동 1035-5	토지	전	·	28		증)28						사유지

물 건 조 서

■ 사 업 명 :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상계동 1035-1 1035-2 1035-5	잣나무	15년생 추정	9주	성명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05 (상계동)				
2		측백나무	20년생 추정	1주						
3			10년생 추정	3주						
4			8년생 추정	2주						
5		회향목	7년생 추정	15주						
6		오가피	8년생 추정	5주						
7		적치물		1식						

◆은평구고시 제2018-64호

도시관리계획(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1996.08.21.)로 구역결정 및 은평구공고 제1998-68호(1998.03.2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03.08.)로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재정비)결정된 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신사동 19-149 외 1필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분할계획에 의한 공동개발(지정) 변경 제안이 있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8.04.12.)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사유

- 선택적 공동개발 토지로 계획되어 있는 단독필지(신사동 19-149)와 연접토지(신사동 19-150) 일부(120.4) 분할계획에 의한 공동개발(지정-2필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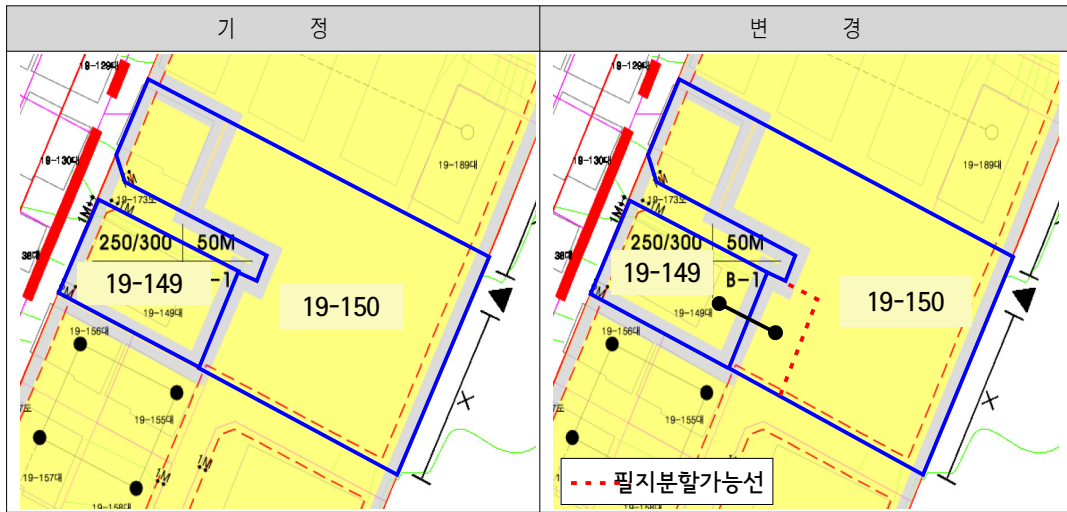
나. 도시관리계획(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공동개발면적(㎡)	계(㎡)	비 고
기 정	신사동	19-149	332.8	332.8	1,719.7	자율적 공동개발
		19-150	1,386.9	1,386.9		자율적 공동개발
변 경	신사동	19-149	332.8	453.2	1,719.7	공동개발 지정 및 필지분할 가능선 지정
		120.4				
		19-150	1,266.5	1,266.5		자율적 공동개발

※ 신사동 19-150 분할예정면적은 향후 측량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도시관리계획(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마.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12, 741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송파구고시 제2018-7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83호(2009.7.23.)로 결정(변경)된 ‘방이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오금동 17-6번지 외 1필지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내용(공동개발 권장)’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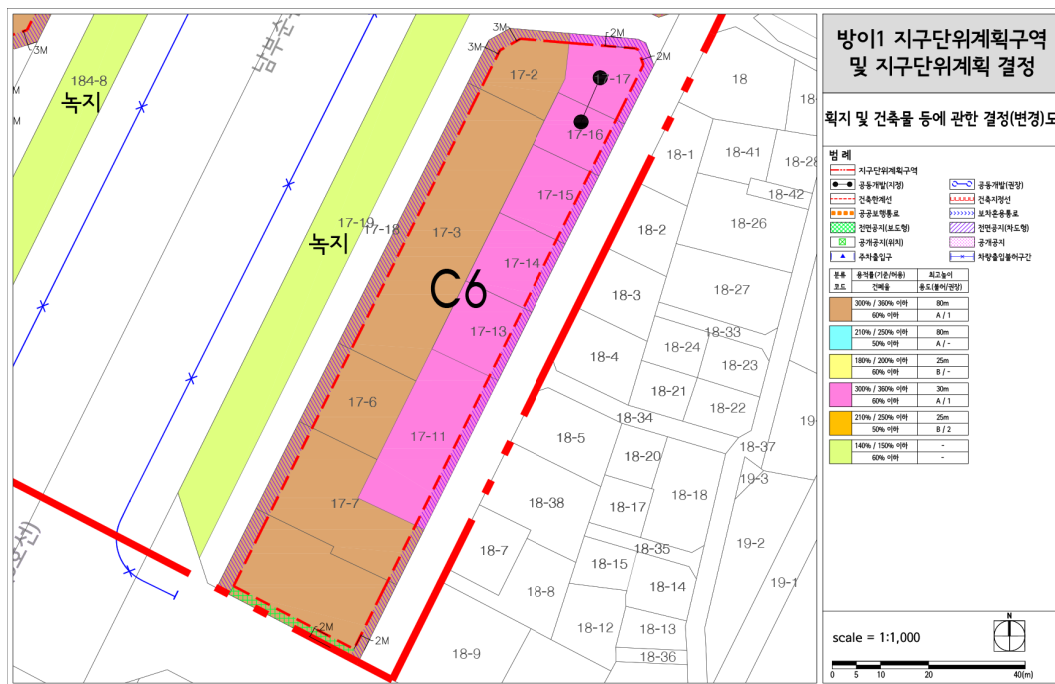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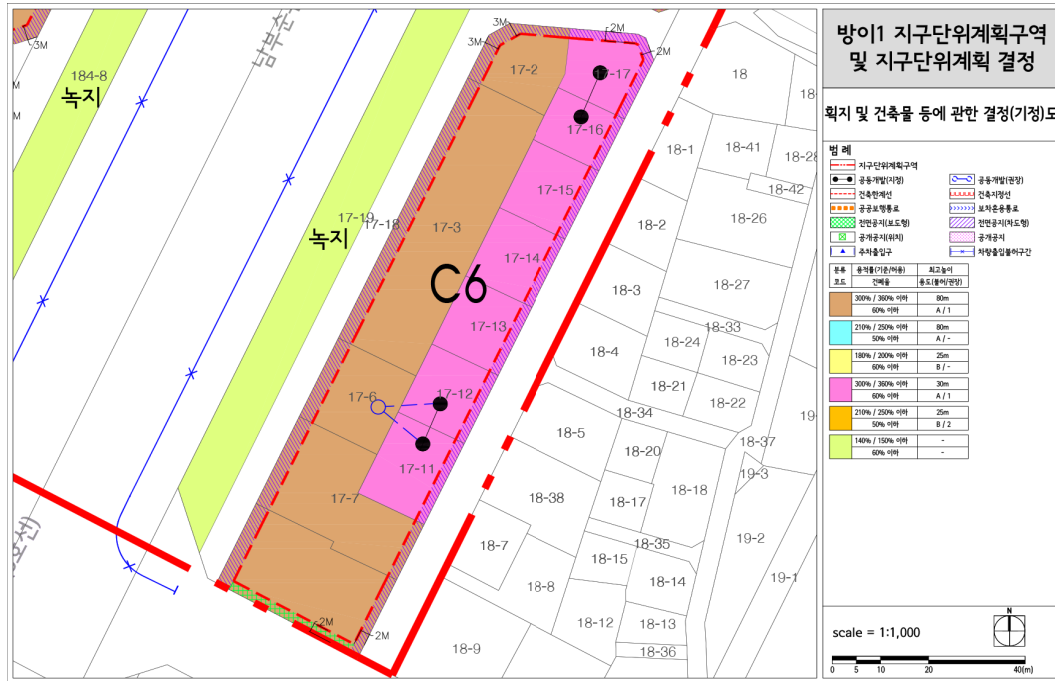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C6	오금동 17-6, -11, -12	864.2	공동개발 권장 (17-11, -12 공동개발지정)	-	17-11, -12는 17-11로 합병

3. 관계도면 : 별첨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300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결정도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18-603호

도시관리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 세부개발계획)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호(2007.1.11.)로 결정된 승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청계천변특별계획구역(Ⅲ-3)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종로구청장

1.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 2148-2812)
3. 열람내용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조서
 - 가. 승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라.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④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	종로구 송인동 206-2번지 일대	17,711	-	17,711	청계천변의 랜드마크를 가지면서 향후 청계천과 연계된 상업 및 주거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획 지 침을 제시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	송인동 1424번지 외 5필지	3,069.1	-	3,069.1	

마. 특별계획구역(Ⅲ-3) 세부개발계획(안)

구 분		지구단위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용적률 계획	기준/허용용적률	· 500%이하 / 800%이하	500%이하/800%이하	—
	상한용적률	· 1,000%이하 · 허용용적률 $\times (1 \times 1.3 \alpha)$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833.93%	
	건폐율	· 60%이하	59.98%	
높이		· 최고높이 80m 이하 ·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따라 90m 초과하여 높이완화 가능	79.8m	
용도	권장용도	· 업무시설 중 사무소, 오피스텔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오피스텔	
	지정용도(1층)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판매시설	
기 타 사 항 에 관 한 계 획	공공보행통로	·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 조성(Ⅲ-1,2 획지경계부, Ⅲ-3,4 획지 경계부)(최소폭원 4m이상)	· 특별계획구역Ⅲ-4구역 과의 연계성 확보 및 차 량/ 보행 동선계획, 시설 조성의 실현 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 로 위치 변경(대상지내)	
	공개공지	· 북측도로변 쌈지형 공지 조성	· 특별계획구역Ⅲ-4구역 과의 연계성 확보 및 시 설조성 실현 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청계천변 쌈지형 공지로 조성 (위치변경 : 청계천변)	
	건축한계선	· 북측도로변 : 2m, · 서측도로변 : 1m	· 북측도로변 : 2m확보 · 서측도로변 : 1m확보	
	벽면한계선(1층)	· 공원 측 보행자전용도로 변 대지(획지)경계선에서 2m	· Open Space 확보를 통해 청계천변 공원 및 보행자 전용 도로와 연 계된 보행네트워크 강화 를 위해 전층에 고층부 벽면 한계선 적용	
	벽면한계선(고층부)	· 청계천변 건축(벽면)한계선에서 5m		
	구역내 개발	· 특별계획구역 전체통합개발 및 2~4개 획지별 통 합개발 또는 단위획지별 개별개발가능 · Ⅲ-2,Ⅲ-3 통합개발시 소로3-11 등 구역내 포 함되는 도로는 세부개발계획수립시 보차혼용 통 로로 변경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정비 사 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능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가능	단위획지별 개별개발 (Ⅲ-3)	

바.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5.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건축과(☎ 2148-2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공고 제2018-832호

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및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1996.8.14.)로 구역 결정 및 은평구공고 제1998-68호(1998.3.20.)로 계획 결정되고 제2007-57호(2007.03.08.)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변경)결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0호(2011.03.24.)로 (변경)결정 고시된 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1996.3.15.)로 구역결정 및 은평구공고 제1998-68호(1998.3.20.)로 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82호(2006.08.17.)로 지구단위계획(재정비)(변경)결정 고시된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8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 사유

- 신사동사거리 일대 교육특화가로 도입을 통한 가로활성화 유도과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 민간개발 촉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자동실효에 대비한 방안 마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사동 19번지 일대	88,000	-	88,00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 (1996.8.14)	생활권 중심
기정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사동 23-1번지 일대	30,000	-	30,00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 (1996.3.6)	생활권 중심

다.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역명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사생활권	준주거지역	88,000		88,000	100.0	생활권중심
응암역생활권	준주거지역	30,000		30,000	100.0	생활권중심

라.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주요 변경내용

- 1) 기반시설(도로, 녹지)등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3) 특화가로 조성방안 등 기타 결정(변경)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 관할 동주민센터(역촌동 351-5305, 신사1동 351-5354, 신사2동 351-5366)

사.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마포구공고 제2018-78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82(1991.6.19.)로 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8-66호(2018.06.07.)호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목과(☎ 02-3153-9754)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8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00-18 ~ 88-138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선통물천길 확장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 도로폭 : 15m
 - 연 장 : 45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인가일로부터 ~ 2019. 12. 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 사. 열람기간 : 2018.06.28. ~ 2018.07.12.(14일간)

<토 지 조 서>

연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번지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신수	91-376	대지	15	15	도로	권금자	마포구 신수동 178			
소계				15	15						

◆ 강남구청고 제2018-109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2011.6.23.)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된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코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43)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8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6-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도로)사업
○ 명 칭 :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규 모 : 4,877.4m²

(면적 : m²)

구 분	녹 지	공 원	도 로	계
면 적	2,273.0 (녹지연결로 1677.3 완충녹지 595.7)	2,075.9 (대모산도시자연공원 1,387.1 개포근린공원 688.8)	528.5	4,877.4

※ [완충녹지] 최초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 건설부고시 제296호(1983.9.10.)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9호(2018.6.21.)

[개포근린공원]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건설부고시 제388호(1984.9.28.)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8호(2018.6.21.)

[도로(양재대로)] 최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건설부고시 제198호(1971.4.8.)

- 내 용 :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조성(연결 산책로 및 진입계단 포함)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자)

- 성 명 : 개포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 소
-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
-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506, 5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3개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 ☎ 02-3423-6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토 지 조 서

계	필지수	지적면적 (㎡)	편입면적 (㎡)
	9	148,388.9	4,877.4

[편입토지조서(녹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	
	시·군	리·동						성명	주소
1	서울특별시	개포동	146-2	도로	14,355.0	190.6	14,164.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서울특별시	개포동	146-1	도로	32,305.0	1,183.5	31,121.5	서울특별시	
3	서울특별시	개포동	144	공원	5,794.4	607.0	5,187.4	서울특별시	
4	서울특별시	개포동	산72-3	임야	1,510.0	9.5	1,500.5	서울특별시	
5	서울특별시	개포동	산136-5	임야	1,754.0	282.4	1,471.6	서울특별시	
소 계					55,718.4	2,273.0	53,445.4		

[편입토지조서(도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	
	시·군	리·동						성명	주소
1	서울특별시	개포동	146-2	도로	14,355.0	259.6	14,095.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서울특별시	개포동	146-1	도로	32,305.0	68.5	32,236.5	서울특별시	
3	서울특별시	개포동	145	공원	411.6	5.5	406.1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4	서울특별시	개포동	산72-3	임야	1,510.0	149.9	1,360.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서울특별시	개포동	산136-5	임야	1,754.0	45.0	1,709.0	서울특별시	
소 계					50,335.6	528.5	49,807.1		

[편입토지조서(대모산도시자연공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	
	시·군	리·동						성명	주소
1	서울특별시	개포동	산69-3	임야	979.0	73.0	906.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서울특별시	개포동	산71-3	임야	1,216.0	163.5	1,052.5	서울특별시	
3	서울특별시	개포동	산72-3	임야	1,510.0	589.5	920.5	서울특별시	
4	서울특별시	개포동	산136-5	임야	1,754.0	561.1	1,192.9	서울특별시	
소 계					5,459.0	1,387.1	4,071.9		

[편입토지조서(개포근린공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	
	시·군	리·동						성명	주소
1	서울특별시	개포동	139	공원	90,063.9	688.8	89,375.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소 계					90,063.9	688.8	89,375.1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도로시설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내 한강 (청담대교)	선박 2척	청담대교 정밀안전점검	' 18.06.27.~ ' 18.06.30.	' 18. 06.2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도로시설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내 한강 (노량대교)	선박 2척	노량대교 정밀안전진단	' 18.07.02.~ ' 18.07.09.	' 18. 06.2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47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현대요트(주) (대표:이철웅)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향로 14번길 1-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50 (반포동,반포한강공 원 내)	선박1척 18ton	수상레저사업	2018. 6. 27 ~ 2018. 12. 31	2018. 6.26.

사업소공고

◆ 서울역사박물관공고 제2018-22호

유 물 구 입 공 고

서울특별시박물관자료수집및관리조례에 따라 유물구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28일
서울역사박물관장

1. 구입 분야 및 대상 유물

번호	구입 분야(주제)	구입 대상 유물
1	한강(경강)	○ 경강: 회화, 지도, 지리지, 군현지, 문집, 시회 등 ○ 나루, 포구 등 수운·상업: 객주·여각·장빙업·선운업·계(契) 등 ○ 빙고(氷庫)·장빙(藏氷) 관련 자료, 경강 산업 자료 ○ 내수면 낚시 및 선박 관련 유물
2	서울·평양지역 3.1운동	○ 서울지역 3.1운동: 3.1운동 민족대표·독립선언 장소 및 간행물 관련 자료 등 ○ 평양지역 3.1운동: 장대현교회, 남산현교회, 평양신학교, 대성학교 등 ○ 무오독립선언, 2.8독립선언 등 기타 항일운동 관련 자료
3	전차	○ 전차 제작 및 운행 관련 자료, 제작자(콜브란, 보스트윅, 이학균) 관련 자료 ○ 한미전기회사, 경성전기주식회사, 동대문 발전소 등 전차 운영 관련 자료 ○ 전차 운행노선도, 전차 종사자 의복, 이정표·표지판 등 실물자료 ○ 전차·정거장 사진 및 사진첩
4	북촌	○ 북촌(계동, 삼청동, 안국동, 가회동, 화동 등) 일대 관련 자료 ○ 북촌 거주 인물 관련 자료 ○ 『세시풍요』, 『동국세시기』 등 조선 후기 도시상업사 및 세시풍속 자료 ○ 문화주택, 정세권 등 일제강점기 주택 건설 및 분양 관련 자료
5	서울 골목 생활사	○ 경화사족, 여향인, 상인, 장인, 천민 등 골목 거주민 생활사 자료 ○ 조선시대 한양의 사건 및 사고 관련 자료 ○ 조선시대 소비 및 유흥 관련 자료
6	한양도성	○ 조선시대: 한양도성 건설·운영·관리·변화·방어 자료, 하도감·염초청·훈련원 관련 자료, 군복·무기류·무예도보통지 등 군사훈련 자료 ○ 대한제국기: 한양도성 수리, 성벽처리위원회, 전차노선, 훈련원공원 관련 자료 ○ 일제강점기: 한양도성 훼손·파괴, 수리 및 주변 근대시설물 ○ 광복이후: 한양도성 발굴·정비, 사대문 및 도성 복원 자료 ○ 흥인지문~광희문 일대, 이간수문, 치 관련 자료
7	동대문운동장	○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조성 및 운영·경기·체육인 자료, 주변지역 생활사 자료 ○ 광복이후: 서울운동장 행사, 집회, 경기대회, 풍물시장 등

번호	구입 분야(주제)	구입 대상 유물
8	청계천	○ 청계천변 3.1아파트상가 관련 도면 및 이미지·영상 자료 ○ 1950년대 이후 청계천1가~9가, 청계천 고가 상권 판매물품 및 이미지 등 관련 자료 ○ 동대문신발상가 제조 신발 및 신발 제조 관련 부속품 ○ 일제강점기~해방이후 남소문동천(장충동, 광희동) 일대 근대 시설관련 자료
9	일반 서울 자료	○ 조선시대 - 도량형 및 목공구 관련 자료 - 관공궐(별궁), 종묘, 성균관, 임진왜란·병자호란, 행정기구(한성부, 의정부, 육조) 등 관련 자료 - 우금(牛禁), 현방(懸房) 등 반촌 관련 자료 - 도성도 및 지도책 ○ 대한제국기: 서울지도, 도시계획 관련 지도 ○ 광복이후: 서울시장 및 시정 관련 자료, 대중교통, 서울 문학 관련 자료, 군사지도 등 ○ 서울 인물 초상화 및 실경 서화(산수화, 계회도, 기록화, 민화, 풍속화 등)

2. 참가 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소장자 등

※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문화재 관련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소유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 및 불법문화재는 매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접수 기간 : 2018년 6월 25일(월)~7월 2일(월)까지

※ 종료일에 임박하여 접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니 되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중 택일

가. 홈페이지 접수 : www.museum.seoul.kr(매도접수 페이지)

나. 이메일 접수 : seulgiya00@seoul.go.kr

※ 접수완료 후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가. 홈페이지 접수 : 매도신청 페이지에서 자료입력 및 유물사진 첨부

나. 이메일 접수 : ①, ②번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③유물사진과 함께 송부

① 매도신청서 1통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이미지 파일 송부
- 매도신청 유물목록은 ②번 양식에 별도 작성

② 유물목록 1통

③ 유물사진파일

- 파일명을 유물번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송부
- 파일형식 : JPG, GIF, PNG(1점 당 1파일 이상, 1파일 5MB 이하)

※ 사진파일이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해주세요.

6. 실물 접수 : 서류 심사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해 개별 통지하여 실물 접수

가. 실물 접수시 제출 서류

-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
-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통
- 개인 : 신분증 지참 또는 사본 제출(사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 대리접수시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와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7. 유물 구입 가격 :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8. 구입 결정

- 가. 유물평가위원회 및 운영자문위원회의 평가·심의에 의해 구입 유물 선정
- 나. 선정 유물에 대해서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 다. 최종 선정된 유물의 평가금액에 매도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9. 소유권 이전 : 계약체결 이후 대금 지급과 함께 유물의 소유권은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전

10. 기타 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출처 및 취득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는 구입하지 않음
-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함
- 라. 유물 접수 및 반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및 제반 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02-724-0162)로 문의

정 정

◆ 정 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61호 정정

서울시보 제3470호(6.21.)에 게재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61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용자의 주소를 정정합니다. (※다른 사항은 동일함)

2018년 6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8번지 일원(시설물 추가에 따른 면적 증가)
 - 면 적 : <당초> 18,218㎡ <변경> 22,31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적장 및 공원, 체육시설, 자원순환센터
 - 내 역 :

당 초	변 경
- 환적장 1식 - 공원·체육시설 1식	- 환적장 1식 - 공원·체육시설 1식 - 자원순환센터 1식

5. 점용기간 : 2016.03.17.~2021.03.16.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